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887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3. [redacted]군수

4.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별지 처분 목록([redacted]구청장) 기재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별지 처분 목록([redacted]구청장) 기재 부과처분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각 가산세 부과처분,

다.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 각 취득세에 관하여, 피고 [redacted]군수가 2012. 10. 26. 한, 피고 [redacted]시장이 2012. 10. 8.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3/4은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군수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redacted]군수가,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창원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이 한 별지 처분 목록(강남구청장) 산출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이 한 별지 처분 목록(서초구청장) 산출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업, 렌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본점 소재지가 2009. 1. 17.부터 2012. 1. 8.까지 [redacted]이었다가 2012. 1. 9. [redacted]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2. 1. 6.까지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 2,834대를 원고의 지점 소재지이던 [redacted]'과 원고의 출장소 소재지이던 [redacted]'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2. 1. 17.부터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 445대(이하 위 시설대여용 자동차 2,834대와 445대를 통틀어 '쟁점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원고의 위 함안 출장소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는 한편, 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함안군, 창원시에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 리스차량 중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들(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경남 함안군, 창원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2. 9. 10.,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2. 9. 30. '원고의 [redacted]출장소와 창원 지점은 각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고의 본점이 소재한 [redacted]시이므로, 원고는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서울특별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 리스차량에 관하여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 27.경 피고 [redacted]군수와 [redacted]시장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redacted]시장은 2012. 10. 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피고 [redacted]군수는 2012. 10. 26. 각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12. 11. 22. 피고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② 2012. 12. 3.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시장의 각 경정거부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①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쟁점 리스차량 중 2,834대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2. 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들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 [redacted]시장의 경정거부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중 원고가 2010. 12. 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 부분의 각하 및 이 사건 리스차량 중 창원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③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쟁점 리스차량 중 445대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④ 피고 [redacted]군수의 경정거부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 중 [redacted] [redacted]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9.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별지 처분 목록([redacted]구청장) 기재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별지 처분 목록([redacted]구청장) 기재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구청장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라 한다)과 피고 [redacted]군수, 피고 [redacted]시장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 취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8호증, 을가 제8, 22호증, 을나 제1, 11호증, 을다 제1, 2, 9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지역적 관할을 의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는 차량에 관한 사법상 권리관계 및 행정적인 관리·규제 또는 공시의 기준이 되므로 모두 획일적·일의적으로 장소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2010. 12. 1.부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자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었는데,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지는 상황은 차량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 등록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 목적은 차량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적 관리에 있고 소유자가 차량을 실제로 보관·관리·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제 대상이 아닌 점, 사용본거지에 대한 정의가 최초로 규정된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라 함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는 개념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축전염병예방법, 민사집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사용본거지'를 차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등록·신고·보고 및 문서 제출의무의 기준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제105조 제1항), 자동차등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제125조 제2호의2)이었다가 2010. 3. 31.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통합 취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라고 규정하여 2010. 3. 31.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지 규정을 승계하였는데,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하에서 등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지'로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승계한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차량 등록면허세의 경우 차량 취득세와 납세지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공부상 기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차량 취득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가 차량 등록면허세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과세를 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은 본질적으로 금융업에 해당하고 리스차량의 구매·인수·등록 등 사무를 리스이용자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보관·관리·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법적 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형식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리스차량의 실제 소재지 내지 사용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보관·관리·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상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용본거지' 등록이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러한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지거나 당사자의 경정 신청,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의 직권 경정이 없었음에도 피고 강남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된 사용본거지'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피고 강남구청장에게는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유효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설령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를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지점은 가공의 사업장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각 지점이 가공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원고의 본점에서 이 사건 리스차량이 이용, 보관, 관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리스차량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것도 아니며, 리스차량 이용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용되는 리스차량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서울특별시와 피고 용인시장, 대구 북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점, 지방세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의 납세지가 된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을 한 점, 원고는 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서울특별시가 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의 취득세 세수확보 경쟁을 묵인한 것을 신뢰하여 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차량 취득세를 납부한 점, 차량 취득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리스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한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하나,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동일하므로 일응 등록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되, 등록지는 사용본거지와 일치하는 때에만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고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귀결된다.

나) 한편,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①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은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사용본거지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정하려면 우선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사용본거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고, 아울러 2010. 12. 1.부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 12. 27.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소유자인 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인이 그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할 당시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 내지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기로 예정한 곳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사용본거지 정의 조항의 문언

사용본거지의 정의 조항인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와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문언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장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 사용본거지 정의 조항의 개정 경과

자동차등록령에 사용본거지의 정의 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사용본거지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고 규정하였고, 위 조항이 1994. 12. 23. 개정되었으나 '교통부령' 부분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인 구 자동차등록규칙(1997. 1. 15. 부령 제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자동차등록령이 1996. 10. 30. 전부개정되면서 구 자동차등록령(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였고, 이 때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자동차등록령까지 '건설교통부령' 부분이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인 구 자동차등록규칙(2008. 3. 14. 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규정하였고, 이 때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자동차등록규칙까지 '건설교통부령' 부분이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이러한 개정 경과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사용본거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주된 사용' 또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여 왔고,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는 형식적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주된 사용'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으로 용어가 구체화되었다. 한편, 입법자는 자동차가 이동성이 강한 동산이어서 실제로 사용 내지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된' 또는 '주로'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라 함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로서 단지 자동차의 공적 관리·규제 등을 위한 형식적 준거지에 불과하다면 구 자동차등록규칙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특정한 장소를 단순히 신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의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내지 4항, 제8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73호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사업장의 소유 여부, 면적, 임대차(전세)계약에 관한 사항과 종업원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구 자동차등록규칙이 사용본거지확인정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위 서류들을 통하여 그 장소가 자동차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로 적정 수의 종업원과 적절한 사업 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문언 및 입법자의 의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단순히 '사용본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본문(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0조(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의 문언과 대비된다. 입법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정할 의사로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신설한 것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면, 민사집행규칙에서와 같은 법문을 사용할 것이지 단순히 '사용본거지'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의 관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를 취득자로 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며,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차량을 등록하기 전 차량의 등록과는 무관하게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실제 차량 등록 및 취득세 납부 절차도 '등록서류준비 → 서류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채권구매 → 인지구입 → 증지구입 → 신규등록관련 서류 제출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차량의 등록보다 취득세 납부가 선행한다]. 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기 전에 납세지 및 납세지에 따른 과세주체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차량의 사실상 취득 당시 존재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될 것을 전제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항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주체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스차량의 납세지인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리스차량의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자도 리스차량의 보관·사용 등에 관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 준수 여부 점검, 리스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리스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자동차 시설대여업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자동차세·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통지서 수령 및 납부(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납시 차량의 회수, 리스 종료 후 차량의 인수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리스차량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관리하는 곳 내지 관리하기로 예정한 곳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등록의 효력과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 및 과세권자를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하는 것과 자동차등록의 효력은 무관하다.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과세물건인 차량을 실제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실질적인 징표를 가지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관한 불복 절차를 거쳤는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 및 과세권자를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redacted]수, [redacted]시장은 원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신규 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redacted]시 [redacted]산구 A, 3층'과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redacted]군, [redacted]시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의 소재지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함안 출장소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및 창원 지점에 관한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으로부터 함안군청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가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읍 [redacted] 1[redacted]리 [redacted] 60㎡'의 무상사용을 2011. 7. 6.부터 2014. 7. 5.까지 승낙받았다가 2012. 5. 16. [redacted]군으로부터 [redacted]군 법률구조공단의 소재지이던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1길 [redacted]50.415㎡'의 무상사용을 2012. 5. 21.부터 2016. 12. 31.까지 승낙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22. 주식회사 경남은행 B지점의 임차인 C로부터 '창원시 A 3층 10㎡'를 2005. 11. 22.부터 2006. 1. 2.까지 전차하였고, 2008. 4. 10. 주식회사 경남은행 B지점의 임차인 D으로부터 '창원시 A 3층 20㎡'를 2008. 4. 10.부터 2010. 4. 10.까지 전차하였으며, 2010. 4. 1. 주식회사 경남은행 B지점의 임차인 E로부터 '창원시 A 3층 25㎡'를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전차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14. 주식회사 경남은행 B지점의 임차인 성원금속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A 3층 25㎡'를 2010. 12. 14.부터 2012. 12. 13.까지 전차하였고, 2011. 5. 14. 주식회사 경남은행 B지점의 임차인 D으로부터 '창원시 A 3층 25㎡'를 2011. 5. 14.부터 2013. 5. 14.까지 전차하였다.

(2)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현황

(가) 원고는 2011. 8. 1.을 개업일로 하여 함안 출장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 6. 15.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으로, 2014. 10. 8. 함안군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12길 12'로 출장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5.을 개업일로 하여 창원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3. 15. 폐업하였다.

(3)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 소재지의 상태

(가) 원고의 함안 출장소 소재지인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함안군청 청사가 위치해 있는데, 2012. 3. 28.경 함안 출장소의 간판이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창원 지점 소재지인 창원시 A 3층 일부는 2010. 4. 1.부터 2012. 3. 15. 폐업할 때까지 전대인들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위 점포는 2012. 3. 28. 경과 2013. 4. 3.경 창원 지점의 전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원고의 창원 지점을 가리키는 간판이 없었다.

(4) 원고는 2011년, 2012년에 사업장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본점에 관한 것만 납부하였고,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2011년에는 본점과 부산 지점으로, 2012년에는 본점과 부산, 대구 지점으로 안분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1, 5 내지 10, 12 내지 15, 24호증, 을나 제5, 6, 7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4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7, 9, 10, 12, 13호증, 을다 제3 내지 7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 피고 함안군수, 창원시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사용본거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은 오히려 가공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1) 2011년부터 창원 지점의 폐업일인 2012. 3. 15.이나 함안 출장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2012. 6. 15.까지 함안 출장소나 창원 지점에는 원고의 직원이 한 명도 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창원 지점의 경우 전대인이 과태료 고지서 등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의 본점으로 발송해 주었고, 함안 출장소의 경우 함안군에서 택배업체 등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원고의 본점으로 발송하였다.

(3) 2011년 이후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의 사무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함안 출장소나 창원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신규 등록하였다가 등록 당일에서 보름 내 기간에 본점 소재지로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의 소재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잘못된 납세지를 기준으로 경남 함안군과 창원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잘못 신고·납부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며, 원고가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모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피고 [redacted]수와 [redacted]지장은, 납세지 선택의 오류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구 지방세기본법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본 따 납세자의 경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입법취지,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으로 과오납 취득세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은 0원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redacted]군수와 [redacted]시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도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의 과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관련법령에 취득세의 과세 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구 지방세법 제3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게 취득세에 관한 과세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과세 주체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 되려면 원고의 주사무소인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가 서울특별시[1]이어야 한다.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래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와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을가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사무소인 본점은 6본부(기계금융본부, 영남지역본부, 자동차금융본부, 리테일금융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이다)로 구성되고, 자동차금융본부 산하에 자동차금융1, 2팀이 있는 사실, 자동차금융1, 2팀은 신차와 중고차의 리스, 할부금융, 만기/조건변경 관리, 재고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원고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차량이 인도된 후 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리스료 청구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시설대여계약의 성격상 리스차량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리스차량에 대한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함안 출장소와 창원 지점이 가공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1차적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체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주로 관리하는 곳 내지 이러한 관리가 예정된 곳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던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2'와 본점 소재지인 '[redacted]구 [redacted]로[redacted](반포동)'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한다.

1) 구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서울특별시가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라) 피고[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redacted]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부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나) 피고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에 관하여 그 세액만을 기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는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남구청장, [redacted]초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은, ① 구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두 종류밖에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각 가산세가 얼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② 원고에게 정보공개나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역 등을 밝혔으므로 가산세 고지의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산세 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역에 2007. 8. 부터 2012. 5.까지 등록된 원고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 취득가액, 취득세 본세액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을가 제22호증으로 제출된 '자동차리스사(캐피탈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자동차리스사 차량취득세 추징' 등의 문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문서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별로 가산세의 종류별 가산세액 및 산출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시장에 대한 청구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및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과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

처분 목록(강남구청장)

(단위:원)

처분일	취득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209	20110103	62,272,727	4,359,090	1,677,360	6,036,450
201209	20110103	263,636,000	18,454,520	7,101,290	25,555,810
201209	20110103	63,363,636	4,435,450	1,706,760	6,142,210
201209	20110103	63,363,636	4,435,450	1,706,760	6,142,210
201209	20110103	63,363,636	4,435,450	1,706,760	6,142,210
201209	20110103	62,272,727	4,359,090	1,677,360	6,036,450
201209	20110103	122,818,182	8,597,270	3,308,220	11,905,490
201209	20110103	63,363,636	4,435,450	1,706,760	6,142,210
201209	20110103	63,363,636	4,435,450	1,706,760	6,142,210
201209	20110103	62,272,727	4,359,090	1,677,360	6,036,450
201209	20110103	90,818,182	6,357,270	2,446,270	8,803,540
201209	20110103	90,818,182	6,357,270	2,446,270	8,803,540
201209	20110103	90,818,182	6,357,270	2,446,270	8,803,540
201209	20110104	63,363,636	4,435,450	1,705,430	6,140,880
201209	20110104	62,272,727	4,359,090	1,676,060	6,035,150
201209	20110104	122,818,182	8,597,270	3,305,640	11,902,910
201209	20110104	122,818,182	8,597,270	3,305,640	11,902,910
201209	20110104	62,272,727	4,359,090	1,676,060	6,035,150
201209	20110104	63,792,727	4,465,490	1,716,970	6,182,460
201209	20110104	64,531,818	4,517,220	1,736,860	6,254,080
201209	20110104	62,272,727	4,359,090	1,676,060	6,035,150
201209	20110104	179,545,455	12,568,180	4,832,450	17,400,630
201209	20110105	128,636,364	9,004,540	3,459,530	12,464,070
201209	20110105	63,363,636	4,435,450	1,704,090	6,139,540
201209	20110105	72,463,636	5,072,450	1,948,830	7,021,280
201209	20110105	63,612,727	4,452,890	1,710,790	6,163,680
201209	20110105	14,454,546	1,011,810	388,730	1,400,540
201209	20110106	179,545,455	12,568,180	4,824,910	17,393,090
201209	20110107	62,272,727	4,359,090	1,672,130	6,031,220
201209	20110107	74,727,273	5,230,900	2,006,570	7,237,470
201209	20110107	79,909,091	5,593,630	2,145,710	7,739,340
201209	20110107	53,545,455	3,748,180	1,437,790	5,185,9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107	53,545,455	3,748,180	1,437,790	5,185,970
201209	20110107	68,181,818	4,772,720	1,830,810	6,603,530
201209	20110107	62,272,727	4,359,090	1,672,130	6,031,220
201209	20110111	74,454,545	5,211,810	1,992,990	7,204,800
201209	20110111	55,000,000	3,850,000	1,472,240	5,322,240
201209	20110111	170,272,727	11,919,090	4,557,850	16,476,940
201209	20110112	80,909,090	5,663,630	2,164,060	7,827,690
201209	20110112	62,272,727	4,359,090	1,665,600	6,024,690
201209	20110112	73,363,636	5,135,450	1,962,250	7,097,700
201209	20110112	62,272,727	4,359,090	1,665,600	6,024,690
201209	20110112	196,909,091	13,783,630	5,266,710	19,050,340
201209	20110113	172,636,364	12,084,540	4,613,860	16,698,400
201209	20110113	63,363,636	4,435,450	1,693,450	6,128,900
201209	20110113	77,875,455	5,451,280	2,081,290	7,532,570
201209	20110113	118,181,818	8,272,720	3,158,520	11,431,240
201209	20110113	90,818,182	6,357,270	2,427,200	8,784,470
201209	20110113	127,272,727	8,909,090	3,401,480	12,310,570
201209	20110113	32,163,636	2,251,450	859,600	3,111,050
201209	20110114	73,545,455	5,148,180	1,964,020	7,112,200
201209	20110114	64,633,636	4,524,350	1,726,030	6,250,380
201209	20110114	60,818,182	4,257,270	1,624,140	5,881,410
201209	20110114	181,090,909	12,676,360	4,836,020	17,512,380
201209	20110114	179,545,455	12,568,180	4,794,750	17,362,930
201209	20110114	63,363,636	4,435,450	1,692,120	6,127,570
201209	20110114	62,272,727	4,359,090	1,662,980	6,022,070
201209	20110117	244,545,455	17,118,180	6,515,170	23,633,350
201209	20110117	62,272,727	4,359,090	1,659,060	6,018,150
201209	20110117	60,818,182	4,257,270	1,620,310	5,877,580
201209	20110117	14,454,000	1,011,780	385,070	1,396,850
201209	20110117	21,048,182	1,473,370	560,760	2,034,130
201209	20110118	75,363,636	5,275,450	2,006,250	7,281,700
201209	20110118	63,542,727	4,447,990	1,691,560	6,139,550
201209	20110118	127,000,000	8,890,000	3,380,860	12,270,860
201209	20110118	62,272,727	4,359,090	1,657,750	6,016,840
201209	20110118	63,363,636	4,435,450	1,686,800	6,122,250
201209	20110118	14,454,000	1,011,780	384,770	1,396,5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118	48,636,364	3,404,540	1,294,730	4,699,270
201209	20110118	34,454,545	2,411,810	917,200	3,329,010
201209	20110119	62,272,727	4,359,090	1,656,440	6,015,530
201209	20110119	64,093,636	4,486,550	1,704,880	6,191,430
201209	20110119	63,363,636	4,435,450	1,685,470	6,120,920
201209	20110119	177,454,545	12,421,810	4,720,280	17,142,090
201209	20110119	80,818,182	5,657,270	2,149,750	7,807,020
201209	20110120	62,272,727	4,359,090	1,655,130	6,014,220
201209	20110120	63,363,636	4,435,450	1,684,140	6,119,590
201209	20110120	14,454,000	1,011,780	384,160	1,395,940
201209	20110120	23,072,727	1,615,090	613,240	2,228,330
201209	20110121	65,801,818	4,606,120	1,747,550	6,353,670
201209	20110121	63,363,636	4,435,450	1,682,800	6,118,250
201209	20110121	63,363,636	4,435,450	1,682,800	6,118,250
201209	20110121	62,272,727	4,359,090	1,653,830	6,012,920
201209	20110121	35,909,091	2,513,630	953,660	3,467,290
201209	20110121	33,909,091	2,373,630	900,540	3,274,170
201209	20110121	60,272,727	4,219,090	1,600,710	5,819,800
201209	20110121	115,454,545	8,081,810	3,066,230	11,148,040
201209	20110121	130,454,545	9,131,810	3,464,600	12,596,410
201209	20110121	21,727,000	1,520,890	577,010	2,097,900
201209	20110124	62,272,727	4,359,090	1,649,900	6,008,990
201209	20110124	63,363,636	4,435,450	1,678,810	6,114,260
201209	20110124	181,090,909	12,676,360	4,798,000	17,474,360
201209	20110125	14,454,000	1,011,780	382,640	1,394,420
201209	20110126	21,727,273	1,520,900	574,740	2,095,640
201209	20110126	80,000,000	5,600,000	2,116,240	7,716,240
201209	20110126	62,272,727	4,359,090	1,647,290	6,006,380
201209	20110126	85,636,364	5,994,540	2,265,320	8,259,860
201209	20110126	14,454,546	1,011,810	382,360	1,394,170
201209	20110127	181,090,909	12,676,360	4,786,590	17,462,950
201209	20110127	63,363,636	4,435,450	1,674,820	6,110,270
201209	20110127	48,636,364	3,404,540	1,285,540	4,690,080
201209	20110127	56,636,364	3,964,540	1,497,000	5,461,540
201209	20110127	62,338,182	4,363,670	1,647,710	6,011,380
201209	20110127	45,545,455	3,188,180	1,203,850	4,392,0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128	48,636,364	3,404,540	1,284,520	4,689,060
201209	20110128	85,636,364	5,994,540	2,261,730	8,256,270
201209	20110128	62,272,727	4,359,090	1,644,670	6,003,760
201209	20110128	63,363,636	4,435,450	1,673,490	6,108,940
201209	20110128	68,636,364	4,804,540	1,812,740	6,617,280
201209	20110128	63,363,636	4,435,450	1,673,490	6,108,940
201209	20110128	61,363,636	4,295,450	1,620,670	5,916,120
201209	20110128	79,090,909	5,536,360	2,088,860	7,625,220
201209	20110128	62,272,727	4,359,090	1,644,670	6,003,760
201209	20110128	62,272,727	4,359,090	1,644,670	6,003,760
201209	20110128	177,454,545	12,421,810	4,686,740	17,108,550
201209	20110131	42,272,727	2,959,090	1,113,790	4,072,880
201209	20110131	14,454,546	1,011,810	380,840	1,392,650
201209	20110131	63,363,636	4,435,450	1,669,500	6,104,950
201209	20110131	62,272,727	4,359,090	1,640,750	5,999,840
201209	20110131	48,636,364	3,404,540	1,281,460	4,686,000
201209	20110131	48,636,364	3,404,540	1,281,460	4,686,000
201209	20110131	63,363,636	4,435,450	1,669,500	6,104,950
201209	20110131	63,363,636	4,435,450	1,669,500	6,104,950
201209	20110131	181,090,909	12,676,360	4,771,370	17,447,730
201209	20110131	63,363,636	4,435,450	1,669,500	6,104,950
201209	20110131	111,363,637	7,795,450	2,934,200	10,729,650
201209	20110201	144,272,727	10,099,090	3,798,250	13,897,340
201209	20110201	33,909,091	2,373,630	892,710	3,266,340
201209	20110201	121,363,636	8,495,450	3,195,130	11,690,580
201209	20110201	109,818,181	7,687,270	2,891,170	10,578,440
201209	20110207	63,363,636	4,435,450	1,660,180	6,095,630
201209	20110207	62,272,727	4,359,090	1,631,590	5,990,680
201209	20110207	120,909,091	8,463,630	3,167,930	11,631,560
201209	20110207	14,454,546	1,011,810	378,710	1,390,520
201209	20110209	51,545,455	3,608,180	1,348,370	4,956,550
201209	20110210	27,272,000	1,363,600	509,160	1,872,760
201209	20110211	130,454,545	9,131,810	3,407,070	12,538,880
201209	20110211	75,363,636	5,275,450	1,968,270	7,243,720
201209	20110211	115,454,545	8,081,810	3,015,320	11,097,130
201209	20110211	85,535,455	5,987,480	2,233,920	8,221,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214	63,363,636	4,435,450	1,650,870	6,086,320
201209	20110214	51,500,000	3,605,000	1,341,780	4,946,780
201209	20110214	60,818,182	4,257,270	1,584,550	5,841,820
201209	20110214	59,909,091	4,193,630	1,560,860	5,754,490
201209	20110214	131,818,182	9,227,270	3,434,380	12,661,650
201209	20110215	86,818,182	6,077,270	2,260,130	8,337,400
201209	20110217	60,818,182	4,257,270	1,580,720	5,837,990
201209	20110217	60,818,182	4,257,270	1,580,720	5,837,990
201209	20110217	123,363,636	8,635,450	3,206,340	11,841,790
201209	20110217	63,363,636	4,435,450	1,646,880	6,082,330
201209	20110217	90,818,182	6,357,270	2,360,450	8,717,720
201209	20110217	90,818,182	6,357,270	2,360,450	8,717,720
201209	20110217	34,310,909	2,401,760	891,770	3,293,530
201209	20110217	33,707,272	2,359,500	876,080	3,235,580
201209	20110217	63,363,636	4,435,450	1,646,880	6,082,330
201209	20110218	14,454,545	1,011,810	375,370	1,387,180
201209	20110218	63,363,636	4,435,450	1,645,550	6,081,000
201209	20110218	63,363,636	4,435,450	1,645,550	6,081,000
201209	20110218	63,363,636	4,435,450	1,645,550	6,081,000
201209	20110218	60,818,182	4,257,270	1,579,440	5,836,710
201209	20110218	63,363,636	4,435,450	1,645,550	6,081,000
201209	20110218	128,090,909	8,966,360	3,326,510	12,292,870
201209	20110218	181,090,909	12,676,360	4,702,920	17,379,280
201209	20110221	81,799,091	5,725,930	2,119,160	7,845,090
201209	20110221	59,818,182	4,187,270	1,549,700	5,736,970
201209	20110221	21,727,273	1,520,900	562,880	2,083,780
201209	20110221	21,727,273	1,520,900	562,880	2,083,780
201209	20110222	19,725,454	1,380,780	510,600	1,891,380
201209	20110223	63,363,636	4,435,450	1,638,890	6,074,340
201209	20110223	63,363,636	4,435,450	1,638,890	6,074,340
201209	20110223	59,909,091	4,193,630	1,549,540	5,743,170
201209	20110223	57,727,273	4,040,900	1,493,110	5,534,010
201209	20110223	30,272,727	2,119,090	782,990	2,902,080
201209	20110223	84,454,545	5,911,810	2,184,410	8,096,220
201209	20110224	63,363,636	4,435,450	1,637,560	6,073,010
201209	20110224	47,927,273	3,354,900	1,238,620	4,593,5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224	75,363,636	5,275,450	1,947,690	7,223,140
201209	20110224	63,363,636	4,435,450	1,637,560	6,073,010
201209	20110224	64,633,636	4,524,350	1,670,390	6,194,740
201209	20110224	74,000,000	5,180,000	1,912,450	7,092,450
201209	20110224	42,636,364	2,984,540	1,101,880	4,086,420
201209	20110224	48,636,364	3,404,540	1,256,940	4,661,480
201209	20110224	17,900,000	1,253,000	462,600	1,715,600
201209	20110224	53,546,000	3,748,220	1,383,830	5,132,050
201209	20110225	129,909,090	9,093,630	3,354,630	12,448,260
201209	20110225	62,454,545	4,371,810	1,612,750	5,984,560
201209	20110225	63,363,636	4,435,450	1,636,230	6,071,680
201209	20110225	74,454,545	5,211,810	1,922,630	7,134,440
201209	20110225	80,818,182	5,657,270	2,086,960	7,744,230
201209	20110225	181,090,909	12,676,360	4,676,300	17,352,660
201209	20110225	60,818,182	4,257,270	1,570,500	5,827,770
201209	20110225	123,363,636	8,635,450	3,185,610	11,821,060
201209	20110225	49,363,636	3,455,450	1,274,710	4,730,160
201209	20110228	63,363,636	4,435,450	1,632,240	6,067,690
201209	20110228	63,363,636	4,435,450	1,632,240	6,067,690
201209	20110228	63,363,636	4,435,450	1,632,240	6,067,690
201209	20110228	21,727,273	1,520,900	559,690	2,080,590
201209	20110228	85,636,364	5,994,540	2,205,980	8,200,520
201209	20110228	45,545,455	3,188,180	1,173,240	4,361,420
201209	20110228	247,363,636	17,315,450	6,372,080	23,687,530
201209	20110228	66,845,000	4,679,150	1,721,920	6,401,070
201209	20110228	17,497,273	1,224,800	450,720	1,675,520
201209	20110228	19,315,000	1,352,050	497,550	1,849,600
201209	20110302	74,454,545	5,211,810	1,914,810	7,126,620
201209	20110302	45,545,455	3,188,180	1,171,330	4,359,510
201209	20110302	90,818,182	6,357,270	2,335,650	8,692,920
201209	20110302	63,363,636	4,435,450	1,629,580	6,065,030
201209	20110302	62,272,727	4,359,090	1,601,520	5,960,610
201209	20110302	128,636,364	9,004,540	3,308,250	12,312,790
201209	20110302	63,363,636	4,435,450	1,629,580	6,065,030
201209	20110302	83,181,818	5,822,720	2,139,260	7,961,980
201209	20110303	63,363,636	4,435,450	1,628,250	6,063,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303	48,636,364	3,404,540	1,249,790	4,654,330
201209	20110303	85,535,000	5,987,450	2,197,990	8,185,440
201209	20110303	50,000,000	3,500,000	1,284,850	4,784,850
201209	20110303	181,090,909	12,676,360	4,653,480	17,329,840
201209	20110304	63,363,636	4,435,450	1,626,920	6,062,370
201209	20110304	80,818,000	5,657,260	2,075,080	7,732,340
201209	20110304	74,454,545	5,211,810	1,911,680	7,123,490
201209	20110304	14,454,545	1,011,810	371,120	1,382,930
201209	20110304	90,000,000	6,300,000	2,310,840	8,610,840
201209	20110304	213,545,455	14,948,180	5,482,980	20,431,160
201209	20110304	40,154,545	2,810,810	1,031,000	3,841,810
201209	20110307	73,545,455	5,148,180	1,883,710	7,031,890
201209	20110307	117,272,727	8,209,090	3,003,690	11,212,780
201209	20110307	74,727,273	5,230,900	1,913,980	7,144,880
201209	20110308	90,818,182	6,357,270	2,324,210	8,681,480
201209	20110308	81,685,455	5,717,980	2,090,480	7,808,460
201209	20110308	74,454,545	5,211,810	1,905,430	7,117,240
201209	20110308	130,454,545	9,131,810	3,338,580	12,470,390
201209	20110309	63,363,636	4,435,450	1,620,260	6,055,710
201209	20110309	45,545,455	3,188,180	1,164,630	4,352,810
201209	20110310	90,909,091	6,363,630	2,322,710	8,686,340
201209	20110310	45,545,455	3,188,180	1,163,670	4,351,850
201209	20110310	179,545,455	12,568,180	4,587,370	17,155,550
201209	20110311	21,454,000	1,501,780	547,690	2,049,470
201209	20110311	90,818,182	6,357,270	2,318,490	8,675,760
201209	20110314	74,454,545	5,211,810	1,896,050	7,107,860
201209	20110314	63,363,636	4,435,450	1,613,610	6,049,060
201209	20110314	64,633,636	4,524,350	1,645,950	6,170,300
201209	20110314	63,363,636	4,435,450	1,613,610	6,049,060
201209	20110314	14,454,545	1,011,810	368,090	1,379,900
201209	20110314	14,454,545	1,011,810	368,090	1,379,900
201209	20110314	90,909,090	6,363,630	2,315,080	8,678,710
201209	20110315	63,363,636	4,435,450	1,612,280	6,047,730
201209	20110315	45,363,000	3,175,410	1,154,250	4,329,660
201209	20110316	95,454,545	6,681,810	2,426,830	9,108,640
201209	20110316	74,948,182	5,246,370	1,905,470	7,151,8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316	61,545,455	4,308,180	1,564,720	5,872,900
201209	20110316	14,454,545	1,011,810	367,480	1,379,290
201209	20110316	61,363,636	4,295,450	1,560,100	5,855,550
201209	20110316	57,836,000	4,048,520	1,470,410	5,518,930
201209	20110316	33,545,000	2,348,150	852,840	3,200,990
201209	20110316	35,363,000	2,475,410	899,060	3,374,470
201209	20110317	74,454,545	5,211,810	1,891,360	7,103,170
201209	20110317	87,181,818	6,102,720	2,214,670	8,317,390
201209	20110317	118,909,091	8,323,630	3,020,630	11,344,260
201209	20110317	63,363,636	4,435,450	1,609,620	6,045,070
201209	20110318	118,181,818	8,272,720	2,999,680	11,272,400
201209	20110318	60,818,182	4,257,270	1,543,680	5,800,950
201209	20110318	60,818,182	4,257,270	1,543,680	5,800,950
201209	20110318	63,363,636	4,435,450	1,608,290	6,043,740
201209	20110321	60,818,000	4,257,260	1,539,840	5,797,100
201209	20110321	63,363,636	4,435,450	1,604,300	6,039,750
201209	20110321	61,545,455	4,308,180	1,558,260	5,866,440
201209	20110321	115,454,545	8,081,810	2,923,180	11,004,990
201209	20110322	47,181,818	3,302,720	1,193,590	4,496,310
201209	20110322	61,545,455	4,308,180	1,556,970	5,865,150
201209	20110322	21,727,000	1,520,890	549,640	2,070,530
201209	20110322	21,727,273	1,520,900	549,650	2,070,550
201209	20110322	45,545,455	3,188,180	1,152,200	4,340,380
201209	20110322	58,636,364	4,104,540	1,483,370	5,587,910
201209	20110323	48,636,364	3,404,540	1,229,370	4,633,910
201209	20110323	63,363,636	4,435,450	1,601,640	6,037,090
201209	20110323	63,363,000	4,435,410	1,601,620	6,037,030
201209	20110323	60,454,545	4,231,810	1,528,100	5,759,910
201209	20110323	171,218,182	11,985,270	4,327,870	16,313,140
201209	20110323	190,000,000	13,300,000	4,802,630	18,102,630
201209	20110323	37,245,454	2,607,180	941,440	3,548,620
201209	20110324	66,163,636	4,631,450	1,671,020	6,302,470
201209	20110324	123,345,000	8,634,150	3,115,200	11,749,350
201209	20110324	136,363,000	9,545,410	3,443,980	12,989,390
201209	20110324	85,636,364	5,994,540	2,162,820	8,157,360
201209	20110324	123,345,000	8,634,150	3,115,200	11,749,3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324	74,454,545	5,211,810	1,880,410	7,092,220
201209	20110324	166,272,727	11,639,090	4,199,370	15,838,460
201209	20110325	125,000,000	8,750,000	3,154,370	11,904,370
201209	20110325	63,363,636	4,435,450	1,598,970	6,034,420
201209	20110325	60,818,182	4,257,270	1,534,740	5,792,010
201209	20110325	63,363,636	4,435,450	1,598,970	6,034,420
201209	20110325	61,363,636	4,295,450	1,548,500	5,843,950
201209	20110325	21,727,273	1,520,900	548,280	2,069,180
201209	20110328	63,363,636	4,435,450	1,594,980	6,030,430
201209	20110328	55,680,909	3,897,660	1,401,590	5,299,250
201209	20110328	63,360,909	4,435,260	1,594,910	6,030,170
201209	20110328	35,909,091	2,513,630	903,890	3,417,520
201209	20110328	28,636,364	2,004,540	720,820	2,725,360
201209	20110329	60,818,182	4,257,270	1,529,630	5,786,900
201209	20110329	57,836,364	4,048,540	1,454,630	5,503,170
201209	20110329	63,363,636	4,435,450	1,593,650	6,029,100
201209	20110330	63,363,636	4,435,450	1,592,320	6,027,770
201209	20110330	60,818,182	4,257,270	1,528,350	5,785,620
201209	20110330	199,871,818	13,991,020	5,022,770	19,013,790
201209	20110330	34,454,545	2,411,810	865,830	3,277,640
201209	20110330	61,545,455	4,308,180	1,546,630	5,854,810
201209	20110330	28,545,454	1,998,180	717,340	2,715,520
201209	20110330	63,363,636	4,435,450	1,592,320	6,027,770
201209	20110330	44,454,545	3,111,810	1,117,130	4,228,940
201209	20110331	30,418,182	2,129,270	763,760	2,893,030
201209	20110331	48,636,000	3,404,520	1,221,190	4,625,710
201209	20110331	70,731,000	4,951,170	1,775,980	6,727,150
201209	20110331	14,454,545	1,011,810	362,930	1,374,740
201209	20110331	14,454,545	1,011,810	362,930	1,374,740
201209	20110331	35,363,636	2,475,450	887,940	3,363,390
201209	20110331	45,545,455	3,188,180	1,143,590	4,331,77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63,363,636	4,435,450	1,590,990	6,026,440
201209	20110331	130,454,545	9,131,810	3,275,570	12,407,380
201209	20110331	172,909,091	12,103,630	4,341,560	16,445,190
201209	20110331	60,818,182	4,257,270	1,527,070	5,784,340
201209	20110331	60,818,182	4,257,270	1,527,070	5,784,340
201209	20110401	76,350,000	5,344,500	1,915,460	7,259,960
201209	20110401	174,272,727	12,199,090	4,372,140	16,571,230
201209	20110404	64,909,000	4,543,630	1,624,340	6,167,970
201209	20110404	43,909,091	3,073,630	1,098,810	4,172,440
201209	20110404	117,272,727	8,209,090	2,934,740	11,143,830
201209	20110405	31,727,273	2,220,900	793,300	3,014,200
201209	20110405	81,599,091	5,711,930	2,040,290	7,752,220
201209	20110406	42,636,364	2,984,540	1,065,170	4,049,710
201209	20110407	14,454,545	1,011,810	360,800	1,372,610
201209	20110407	62,088,182	4,346,170	1,549,840	5,896,010
201209	20110407	63,363,636	4,435,450	1,581,680	6,017,130
201209	20110407	59,909,000	4,193,630	1,495,440	5,689,070
201209	20110407	34,321,000	2,402,470	856,710	3,259,180
201209	20110407	34,364,545	2,405,510	857,800	3,263,310
201209	20110408	74,454,000	5,211,780	1,856,950	7,068,730
201209	20110408	59,909,000	4,193,630	1,494,180	5,687,810
201209	20110408	63,363,000	4,435,410	1,580,330	6,015,740
201209	20110408	48,636,000	3,404,520	1,213,020	4,617,540
201209	20110408	31,727,273	2,220,900	791,300	3,012,200
201209	20110408	40,827,000	2,857,890	1,018,250	3,876,140
201209	20110408	59,909,091	4,193,630	1,494,180	5,687,810
201209	20110411	63,363,636	4,435,450	1,576,350	6,011,800
201209	20110411	63,363,636	4,435,450	1,576,350	6,011,800
201209	20110411	73,545,455	5,148,180	1,829,650	6,977,830
201209	20110412	20,000,000	1,400,000	497,140	1,897,140
201209	20110412	14,454,545	1,011,810	359,290	1,371,100
201209	20110412	45,467,272	3,182,700	1,130,170	4,312,870
201209	20110413	63,363,636	4,435,450	1,573,690	6,009,140
201209	20110413	127,901,818	8,953,120	3,176,560	12,129,6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413	61,363,636	4,295,450	1,524,020	5,819,470
201209	20110413	217,272,727	15,209,090	5,396,170	20,605,260
201209	20110413	31,727,273	2,220,900	787,970	3,008,870
201209	20110414	63,363,636	4,435,450	1,572,360	6,007,810
201209	20110414	54,090,909	3,786,360	1,342,260	5,128,620
201209	20110414	145,454,000	10,181,780	3,609,430	13,791,210
201209	20110414	82,130,000	5,749,100	2,038,050	7,787,150
201209	20110414	63,363,636	4,435,450	1,572,360	6,007,810
201209	20110414	21,236,000	1,486,520	526,960	2,013,480
201209	20110415	43,454,545	3,041,810	1,077,400	4,119,210
201209	20110415	40,600,000	2,842,000	1,006,630	3,848,630
201209	20110415	63,363,636	4,435,450	1,571,030	6,006,480
201209	20110415	247,363,636	17,315,450	6,133,130	23,448,580
201209	20110415	64,633,636	4,524,350	1,602,520	6,126,870
201209	20110415	62,088,182	4,346,170	1,539,400	5,885,570
201209	20110415	56,636,364	3,964,540	1,404,230	5,368,770
201209	20110415	174,363,636	12,205,450	4,323,170	16,528,620
201209	20110415	24,109,092	1,687,630	597,750	2,285,380
201209	20110418	60,818,182	4,257,270	1,504,080	5,761,350
201209	20110418	59,909,091	4,193,630	1,481,600	5,675,230
201209	20110418	55,818,182	3,907,270	1,380,430	5,287,700
201209	20110418	60,272,727	4,219,090	1,490,590	5,709,680
201209	20110418	247,363,000	17,315,410	6,117,530	23,432,940
201209	20110418	21,454,545	1,501,810	530,580	2,032,390
201209	20110419	167,818,000	11,747,260	4,146,780	15,894,040
201209	20110419	66,818,182	4,677,270	1,651,070	6,328,340
201209	20110419	63,363,000	4,435,410	1,565,690	6,001,100
201209	20110419	63,363,636	4,435,450	1,565,710	6,001,160
201209	20110419	80,818,182	5,657,270	1,997,010	7,654,280
201209	20110419	60,818,000	4,257,260	1,502,810	5,760,070
201209	20110419	127,272,727	8,909,090	3,144,900	12,053,990
201209	20110420	32,772,727	2,294,090	809,110	3,103,200
201209	20110420	31,727,273	2,220,900	783,310	3,004,210
201209	20110421	31,727,273	2,220,900	782,640	3,003,540
201209	20110421	87,181,818	6,102,720	2,150,590	8,253,310
201209	20110421	90,818,182	6,357,270	2,240,290	8,597,5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421	63,363,636	4,435,450	1,563,050	5,998,500
201209	20110421	56,636,000	3,964,520	1,397,090	5,361,610
201209	20110421	14,454,545	1,011,810	356,550	1,368,360
201209	20110421	117,272,000	8,209,040	2,892,850	11,101,890
201209	20110421	30,818,181	2,157,270	760,210	2,917,480
201209	20110422	60,818,182	4,257,270	1,498,980	5,756,250
201209	20110422	63,363,636	4,435,450	1,561,720	5,997,170
201209	20110422	63,363,636	4,435,450	1,561,720	5,997,170
201209	20110422	75,363,636	5,275,450	1,857,480	7,132,930
201209	20110422	65,063,636	4,554,450	1,603,620	6,158,070
201209	20110422	130,454,545	9,131,810	3,215,300	12,347,110
201209	20110425	64,633,636	4,524,350	1,588,950	6,113,300
201209	20110425	75,363,636	5,275,450	1,852,730	7,128,180
201209	20110425	35,909,091	2,513,630	882,780	3,396,410
201209	20110426	63,363,636	4,435,450	1,556,390	5,991,840
201209	20110426	124,636,364	8,724,540	3,061,430	11,785,970
201209	20110426	72,636,364	5,084,540	1,784,150	6,868,690
201209	20110426	90,818,000	6,357,260	2,230,760	8,588,020
201209	20110426	31,727,273	2,220,900	779,310	3,000,210
201209	20110426	62,636,364	4,384,540	1,538,520	5,923,060
201209	20110427	130,454,000	9,131,780	3,201,590	12,333,370
201209	20110427	70,203,636	4,914,250	1,722,930	6,637,180
201209	20110428	63,363,636	4,435,450	1,553,730	5,989,180
201209	20110428	87,181,818	6,102,720	2,137,770	8,240,490
201209	20110428	64,633,636	4,524,350	1,584,870	6,109,220
201209	20110428	64,636,364	4,524,540	1,584,930	6,109,470
201209	20110428	63,363,636	4,435,450	1,553,730	5,989,180
201209	20110428	72,636,364	5,084,540	1,781,100	6,865,640
201209	20110428	63,363,636	4,435,450	1,553,730	5,989,180
201209	20110428	75,363,636	5,275,450	1,847,990	7,123,440
201209	20110428	59,909,091	4,193,630	1,469,020	5,662,650
201209	20110428	56,636,364	3,964,540	1,388,770	5,353,310
201209	20110428	61,363,636	4,295,450	1,504,690	5,800,140
201209	20110428	61,363,636	4,295,450	1,504,690	5,800,140
201209	20110428	125,727,273	8,800,900	3,082,950	11,883,850
201209	20110428	63,363,000	4,435,410	1,553,720	5,989,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428	63,363,000	4,435,410	1,553,720	5,989,130
201209	20110428	80,818,000	5,657,260	1,981,730	7,638,990
201209	20110428	24,007,274	1,680,500	588,670	2,269,170
201209	20110429	130,454,545	9,131,810	3,196,130	12,327,940
201209	20110429	56,727,273	3,970,900	1,389,810	5,360,710
201209	20110429	117,272,727	8,209,090	2,873,170	11,082,260
201209	20110429	46,727,272	3,270,900	1,144,810	4,415,710
201209	20110429	78,284,545	5,479,910	1,917,960	7,397,870
201209	20110429	56,645,455	3,965,180	1,387,800	5,352,980
201209	20110429	56,727,273	3,970,900	1,389,810	5,360,710
201209	20110429	54,818,182	3,837,270	1,343,040	5,180,310
201209	20110429	59,909,091	4,193,630	1,467,760	5,661,390
201209	20110429	63,363,636	4,435,450	1,552,400	5,987,850
201209	20110429	87,181,818	6,102,720	2,135,940	8,238,660
201209	20110429	63,363,636	4,435,450	1,552,400	5,987,850
201209	20110429	63,363,636	4,435,450	1,552,400	5,987,850
201209	20110429	31,727,273	2,220,900	777,310	2,998,210
201209	20110429	167,818,182	11,747,270	4,111,540	15,858,810
201209	20110429	247,363,636	17,315,450	6,060,400	23,375,850
201209	20110502	63,363,636	4,435,450	1,548,410	5,983,860
201209	20110502	87,181,818	6,102,720	2,130,450	8,233,170
201209	20110502	90,818,182	6,357,270	2,219,310	8,576,580
201209	20110502	117,272,727	8,209,090	2,865,780	11,074,870
201209	20110502	63,363,636	4,435,450	1,548,410	5,983,860
201209	20110502	63,270,000	4,428,900	1,546,120	5,975,020
201209	20110502	130,454,545	9,131,810	3,187,910	12,319,720
201209	20110502	52,220,909	3,655,460	1,276,110	4,931,570
201209	20110503	64,633,636	4,524,350	1,578,090	6,102,440
201209	20110503	72,636,364	5,084,540	1,773,470	6,858,010
201209	20110503	90,818,182	6,357,270	2,217,410	8,574,680
201209	20110503	51,545,455	3,608,180	1,258,520	4,866,700
201209	20110503	45,545,455	3,188,180	1,112,030	4,300,210
201209	20110503	94,454,000	6,611,780	2,306,180	8,917,960
201209	20110503	23,975,454	1,678,280	585,370	2,263,650
201209	20110504	63,363,636	4,435,450	1,545,750	5,981,200
201209	20110504	39,909,091	2,793,630	973,570	3,767,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506	63,363,636	4,435,450	1,543,090	5,978,540
201209	20110506	59,909,091	4,193,630	1,458,950	5,652,580
201209	20110506	14,454,545	1,011,810	352,000	1,363,810
201209	20110509	74,454,545	5,211,810	1,808,490	7,020,300
201209	20110509	63,363,636	4,435,450	1,539,100	5,974,550
201209	20110509	83,181,818	5,822,720	2,020,470	7,843,190
201209	20110511	130,454,545	9,131,810	3,163,250	12,295,060
201209	20110511	61,090,000	4,276,300	1,481,310	5,757,610
201209	20110512	64,633,636	4,524,350	1,565,870	6,090,220
201209	20110513	60,490,000	4,234,300	1,464,220	5,698,520
201209	20110513	63,363,000	4,435,410	1,533,760	5,969,170
201209	20110513	63,363,000	4,435,410	1,533,760	5,969,170
201209	20110513	45,545,000	3,188,150	1,102,460	4,290,610
201209	20110513	60,818,182	4,257,270	1,472,150	5,729,420
201209	20110513	60,818,182	4,257,270	1,472,150	5,729,420
201209	20110513	61,090,909	4,276,360	1,478,760	5,755,120
201209	20110513	63,363,636	4,435,450	1,533,770	5,969,220
201209	20110513	63,363,636	4,435,450	1,533,770	5,969,220
201209	20110516	87,181,818	6,102,720	2,104,820	8,207,540
201209	20110517	48,636,000	3,404,520	1,173,190	4,577,710
201209	20110517	117,272,727	8,209,090	2,828,840	11,037,930
201209	20110517	182,990,000	12,809,300	4,414,080	17,223,380
201209	20110517	126,694,364	8,868,600	3,056,110	11,924,710
201209	20110517	75,363,636	5,275,450	1,817,920	7,093,370
201209	20110517	61,063,000	4,274,410	1,472,950	5,747,360
201209	20110517	60,490,909	4,234,360	1,459,150	5,693,510
201209	20110517	61,090,909	4,276,360	1,473,630	5,749,990
201209	20110517	60,818,000	4,257,260	1,467,040	5,724,300
201209	20110517	117,272,727	8,209,090	2,828,840	11,037,930
201209	20110517	39,818,181	2,787,270	960,480	3,747,750
201209	20110517	84,000,000	5,880,000	2,026,240	7,906,240
201209	20110517	28,636,364	2,004,540	690,750	2,695,290
201209	20110518	60,272,000	4,219,040	1,452,600	5,671,640
201209	20110518	64,633,636	4,524,350	1,557,730	6,082,080
201209	20110518	130,454,000	9,131,780	3,144,060	12,275,840
201209	20110519	63,363,636	4,435,450	1,525,790	5,961,2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519	57,818,182	4,047,270	1,392,250	5,439,520
201209	20110519	67,413,636	4,718,950	1,623,310	6,342,260
201209	20110519	87,181,818	6,102,720	2,099,330	8,202,050
201209	20110519	84,018,182	5,881,270	2,023,150	7,904,420
201209	20110519	90,818,182	6,357,270	2,186,890	8,544,160
201209	20110519	78,636,364	5,504,540	1,893,550	7,398,090
201209	20110519	76,630,000	5,364,100	1,845,250	7,209,350
201209	20110520	65,063,636	4,554,450	1,565,360	6,119,810
201209	20110520	64,633,636	4,524,350	1,555,010	6,079,360
201209	20110520	89,090,909	6,236,360	2,143,430	8,379,790
201209	20110520	61,090,909	4,276,360	1,469,780	5,746,140
201209	20110520	64,633,636	4,524,350	1,555,010	6,079,360
201209	20110520	63,363,636	4,435,450	1,524,460	5,959,910
201209	20110520	35,909,091	2,513,630	863,920	3,377,550
201209	20110520	63,363,636	4,435,450	1,524,460	5,959,910
201209	20110520	80,818,182	5,657,270	1,944,390	7,601,660
201209	20110520	130,454,545	9,131,810	3,138,600	12,270,410
201209	20110523	75,363,000	5,275,410	1,808,400	7,083,810
201209	20110523	275,454,000	19,281,780	6,609,780	25,891,560
201209	20110523	177,454,000	12,421,780	4,258,180	16,679,960
201209	20110523	63,363,636	4,435,450	1,520,470	5,955,920
201209	20110523	61,090,909	4,276,360	1,465,930	5,742,290
201209	20110523	66,983,636	4,688,850	1,607,330	6,296,180
201209	20110523	83,181,818	5,822,720	1,996,020	7,818,740
201209	20110524	64,633,636	4,524,350	1,549,580	6,073,930
201209	20110524	117,272,727	8,209,090	2,811,600	11,020,690
201209	20110524	60,818,182	4,257,270	1,458,110	5,715,380
201209	20110524	48,636,364	3,404,540	1,166,040	4,570,580
201209	20110524	60,818,000	4,257,260	1,458,100	5,715,360
201209	20110524	38,609,091	2,702,630	925,640	3,628,270
201209	20110525	60,818,000	4,257,260	1,456,830	5,714,090
201209	20110525	37,110,000	2,597,700	888,930	3,486,630
201209	20110525	61,090,909	4,276,360	1,463,360	5,739,720
201209	20110525	130,454,545	9,131,810	3,124,900	12,256,710
201209	20110526	125,727,273	8,800,900	3,009,020	11,809,920
201209	20110526	61,063,636	4,274,450	1,461,430	5,735,8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526	60,818,000	4,257,260	1,455,550	5,712,810
201209	20110526	61,090,909	4,276,360	1,462,080	5,738,440
201209	20110526	63,363,636	4,435,450	1,516,480	5,951,930
201209	20110526	117,272,727	8,209,090	2,806,670	11,015,760
201209	20110526	72,636,364	5,084,540	1,738,390	6,822,930
201209	20110526	72,636,364	5,084,540	1,738,390	6,822,930
201209	20110526	63,363,636	4,435,450	1,516,480	5,951,930
201209	20110526	63,363,636	4,435,450	1,516,480	5,951,930
201209	20110526	38,822,727	2,717,590	929,130	3,646,720
201209	20110527	63,363,636	4,435,450	1,515,140	5,950,590
201209	20110527	63,363,636	4,435,450	1,515,140	5,950,590
201209	20110527	63,363,636	4,435,450	1,515,140	5,950,590
201209	20110527	125,727,273	8,800,900	3,006,380	11,807,280
201209	20110527	125,727,273	8,800,900	3,006,380	11,807,280
201209	20110527	130,454,545	9,131,810	3,119,420	12,251,230
201209	20110527	29,000,000	2,030,000	693,440	2,723,440
201209	20110527	47,181,818	3,302,720	1,128,200	4,430,920
201209	20110530	115,454,545	8,081,810	2,753,470	10,835,280
201209	20110530	61,090,909	4,276,360	1,456,950	5,733,310
201209	20110530	62,272,727	4,359,090	1,485,130	5,844,220
201209	20110530	63,363,636	4,435,450	1,511,150	5,946,600
201209	20110530	61,090,909	4,276,360	1,456,950	5,733,310
201209	20110530	64,633,636	4,524,350	1,541,440	6,065,790
201209	20110530	117,272,727	8,209,090	2,796,820	11,005,910
201209	20110530	63,363,636	4,435,450	1,511,150	5,946,600
201209	20110530	87,181,818	6,102,720	2,079,190	8,181,910
201209	20110530	87,181,818	6,102,720	2,079,190	8,181,910
201209	20110530	82,090,909	5,746,360	1,957,780	7,704,140
201209	20110531	75,363,000	5,275,410	1,795,740	7,071,150
201209	20110531	66,163,636	4,631,450	1,576,540	6,207,990
201209	20110531	63,363,000	4,435,410	1,509,810	5,945,220
201209	20110531	61,090,000	4,276,300	1,455,650	5,731,950
201209	20110531	65,923,000	4,614,610	1,570,810	6,185,420
201209	20110531	58,090,909	4,066,360	1,384,180	5,450,540
201209	20110531	58,636,364	4,104,540	1,397,170	5,501,710
201209	20110531	84,000,000	5,880,000	2,001,550	7,881,5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531	61,090,909	4,276,360	1,455,670	5,732,030
201209	20110531	60,545,000	4,238,150	1,442,660	5,680,810
201209	20110531	61,090,000	4,276,300	1,455,650	5,731,950
201209	20110531	63,363,000	4,435,410	1,509,810	5,945,220
201209	20110531	61,090,000	4,276,300	1,455,650	5,731,950
201209	20110531	63,000,000	4,410,000	1,501,160	5,911,160
201209	20110531	61,090,909	4,276,360	1,455,670	5,732,030
201209	20110531	53,181,818	3,722,720	1,267,200	4,989,920
201209	20110531	57,090,909	3,996,360	1,360,350	5,356,710
201209	20110531	14,454,545	1,011,810	344,410	1,356,220
201209	20110531	31,727,273	2,220,900	755,990	2,976,890
201209	20110601	53,181,000	3,722,670	1,266,070	4,988,740
201209	20110601	53,181,818	3,722,720	1,266,090	4,988,810
201209	20110601	61,090,909	4,276,360	1,454,380	5,730,740
201209	20110601	70,818,182	4,957,270	1,685,960	6,643,230
201209	20110601	61,363,636	4,295,450	1,460,880	5,756,330
201209	20110602	63,363,636	4,435,450	1,507,160	5,942,610
201209	20110602	31,727,273	2,220,900	754,660	2,975,560
201209	20110603	61,090,000	4,276,300	1,451,800	5,728,100
201209	20110603	92,298,000	6,460,860	2,193,450	8,654,310
201209	20110603	66,672,727	4,667,090	1,584,460	6,251,550
201209	20110607	60,181,000	4,212,670	1,425,140	5,637,810
201209	20110607	87,181,000	6,102,670	2,064,520	8,167,190
201209	20110607	35,363,000	2,475,410	837,420	3,312,830
201209	20110607	90,000,000	6,300,000	2,131,290	8,431,290
201209	20110608	57,727,273	4,040,900	1,365,820	5,406,720
201209	20110609	79,454,545	5,561,810	1,878,220	7,440,030
201209	20110610	52,454,545	3,671,810	1,238,860	4,910,670
201209	20110610	74,363,636	5,205,450	1,756,310	6,961,760
201209	20110610	47,909,091	3,353,630	1,131,500	4,485,130
201209	20110610	47,909,091	3,353,630	1,131,500	4,485,130
201209	20110610	18,189,091	1,273,230	429,580	1,702,810
201209	20110610	48,818,182	3,417,270	1,152,980	4,570,250
201209	20110610	71,818,182	5,027,270	1,696,190	6,723,460
201209	20110610	84,363,636	5,905,450	1,992,490	7,897,940
201209	20110610	21,727,273	1,520,900	513,150	2,034,0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613	60,288,182	4,220,170	1,420,080	5,640,250
201209	20110613	43,545,455	3,048,180	1,025,700	4,073,880
201209	20110614	76,563,636	5,359,450	1,801,840	7,161,290
201209	20110614	42,090,909	2,946,360	990,560	3,936,920
201209	20110614	47,909,091	3,353,630	1,127,480	4,481,110
201209	20110614	53,181,818	3,722,720	1,251,570	4,974,290
201209	20110614	43,454,545	3,041,810	1,022,650	4,064,460
201209	20110614	59,818,182	4,187,270	1,407,750	5,595,020
201209	20110614	31,727,273	2,220,900	746,660	2,967,560
201209	20110615	67,093,636	4,696,550	1,577,570	6,274,120
201209	20110615	54,363,636	3,805,450	1,278,250	5,083,700
201209	20110615	179,545,455	12,568,180	4,221,640	16,789,820
201209	20110615	29,454,546	2,061,810	692,550	2,754,360
201209	20110615	21,727,273	1,520,900	510,870	2,031,770
201209	20110616	62,454,545	4,371,810	1,467,170	5,838,980
201209	20110616	52,454,545	3,671,810	1,232,250	4,904,060
201209	20110616	48,818,182	3,417,270	1,146,830	4,564,100
201209	20110616	40,727,272	2,850,900	956,760	3,807,660
201209	20110616	84,057,272	5,884,000	1,974,670	7,858,670
201209	20110617	59,000,000	4,130,000	1,384,780	5,514,780
201209	20110617	59,818,182	4,187,270	1,403,980	5,591,250
201209	20110617	60,818,182	4,257,270	1,427,450	5,684,720
201209	20110617	47,909,091	3,353,630	1,124,460	4,478,090
201209	20110617	59,048,182	4,133,370	1,385,910	5,519,280
201209	20110617	129,272,727	9,049,090	3,034,150	12,083,240
201209	20110617	52,454,545	3,671,810	1,231,150	4,902,960
201209	20110617	14,388,182	1,007,170	337,700	1,344,870
201209	20110617	114,272,727	7,999,090	2,682,080	10,681,170
201209	20110620	60,272,727	4,219,090	1,410,850	5,629,940
201209	20110620	114,272,727	7,999,090	2,674,880	10,673,970
201209	20110620	60,181,818	4,212,720	1,408,720	5,621,440
201209	20110620	60,272,000	4,219,040	1,410,830	5,629,870
201209	20110621	47,909,091	3,353,630	1,120,440	4,474,070
201209	20110621	59,000,000	4,130,000	1,379,830	5,509,830
201209	20110621	48,818,182	3,417,270	1,141,700	4,558,970
201209	20110621	20,363,637	1,425,450	476,240	1,901,6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621	42,090,909	2,946,360	984,370	3,930,730
201209	20110621	35,363,636	2,475,450	827,040	3,302,490
201209	20110621	125,909,091	8,813,630	2,944,620	11,758,250
201209	20110621	31,727,273	2,220,900	742,000	2,962,900
201209	20110621	54,909,000	3,843,630	1,284,150	5,127,780
201209	20110622	59,272,727	4,149,090	1,384,950	5,534,040
201209	20110622	70,363,636	4,925,450	1,644,110	6,569,560
201209	20110622	60,272,727	4,219,090	1,408,320	5,627,410
201209	20110622	62,454,545	4,371,810	1,459,300	5,831,110
201209	20110622	55,727,273	3,900,900	1,302,120	5,203,020
201209	20110622	31,727,273	2,220,900	741,330	2,962,230
201209	20110622	60,181,818	4,212,720	1,406,200	5,618,920
201209	20110622	64,154,545	4,490,810	1,499,030	5,989,840
201209	20110622	60,909,091	4,263,630	1,423,190	5,686,820
201209	20110623	64,086,364	4,486,040	1,496,080	5,982,120
201209	20110623	63,724,545	4,460,710	1,487,640	5,948,350
201209	20110623	31,727,273	2,220,900	740,670	2,961,570
201209	20110623	73,181,818	5,122,720	1,708,420	6,831,140
201209	20110623	62,454,545	4,371,810	1,457,990	5,829,800
201209	20110623	52,454,545	3,671,810	1,224,540	4,896,350
201209	20110623	62,883,636	4,401,850	1,468,010	5,869,860
201209	20110623	62,454,545	4,371,810	1,457,990	5,829,800
201209	20110623	89,454,545	6,261,810	2,088,310	8,350,120
201209	20110623	48,818,182	3,417,270	1,139,650	4,556,920
201209	20110623	61,881,000	4,331,670	1,444,600	5,776,270
201209	20110623	30,373,000	2,126,110	709,050	2,835,160
201209	20110624	70,909,091	4,963,630	1,653,870	6,617,500
201209	20110624	70,909,091	4,963,630	1,653,870	6,617,500
201209	20110624	48,818,182	3,417,270	1,138,630	4,555,900
201209	20110624	63,724,545	4,460,710	1,486,300	5,947,010
201209	20110624	35,363,636	2,475,450	824,810	3,300,260
201209	20110624	119,909,091	8,393,630	2,796,750	11,190,380
201209	20110627	35,363,000	2,475,410	822,570	3,297,980
201209	20110627	60,909,000	4,263,630	1,416,790	5,680,420
201209	20110627	59,818,182	4,187,270	1,391,420	5,578,690
201209	20110627	82,697,273	5,788,800	1,923,610	7,712,4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627	62,454,545	4,371,810	1,452,750	5,824,560
201209	20110627	60,272,727	4,219,090	1,401,990	5,621,080
201209	20110627	52,454,545	3,671,810	1,220,140	4,891,950
201209	20110627	145,454,545	10,181,810	3,383,410	13,565,220
201209	20110627	42,195,455	2,953,680	981,500	3,935,180
201209	20110627	105,636,364	7,394,540	2,457,190	9,851,730
201209	20110628	63,724,545	4,460,710	1,480,950	5,941,660
201209	20110628	60,181,000	4,212,670	1,398,600	5,611,270
201209	20110628	140,454,545	9,831,810	3,264,150	13,095,960
201209	20110628	57,100,000	3,997,000	1,327,000	5,324,000
201209	20110628	129,000,000	9,030,000	2,997,960	12,027,960
201209	20110628	74,636,363	5,224,540	1,734,530	6,959,070
201209	20110628	48,818,182	3,417,270	1,134,520	4,551,790
201209	20110628	79,454,545	5,561,810	1,846,510	7,408,320
201209	20110628	14,454,545	1,011,810	335,910	1,347,720
201209	20110628	114,272,727	7,999,090	2,655,680	10,654,770
201209	20110628	35,363,636	2,475,450	821,840	3,297,290
201209	20110629	129,000,000	9,030,000	2,995,250	12,025,250
201209	20110629	60,272,000	4,219,040	1,399,440	5,618,480
201209	20110629	166,363,000	11,645,410	3,862,780	15,508,190
201209	20110629	54,000,000	3,780,000	1,253,820	5,033,820
201209	20110630	63,724,000	4,460,680	1,478,260	5,938,940
201209	20110630	62,454,000	4,371,780	1,448,800	5,820,580
201209	20110630	62,454,000	4,371,780	1,448,800	5,820,580
201209	20110630	32,617,518	2,283,220	756,650	3,039,870
201209	20110630	179,545,455	12,568,180	4,165,080	16,733,260
201209	20110630	40,727,272	2,850,900	944,780	3,795,680
201209	20110630	46,663,636	3,266,450	1,082,500	4,348,950
201209	20110630	57,727,272	4,040,900	1,339,150	5,380,05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55,818,182	3,907,270	1,294,860	5,202,130
201209	20110630	175,909,091	12,313,630	4,080,730	16,394,360
201209	20110630	60,181,818	4,212,720	1,396,090	5,608,810
201209	20110630	114,272,727	7,999,090	2,650,890	10,649,980
201209	20110630	81,344,545	5,694,110	1,887,020	7,581,130
201209	20110630	79,454,545	5,561,810	1,843,180	7,404,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630	48,818,182	3,417,270	1,132,470	4,549,740
201209	20110630	62,454,545	4,371,810	1,448,810	5,820,620
201209	20110630	60,272,727	4,219,090	1,398,190	5,617,280
201209	20110630	63,724,545	4,460,710	1,478,270	5,938,980
201209	20110630	60,272,000	4,219,040	1,398,180	5,617,220
201209	20110630	60,272,727	4,219,090	1,398,190	5,617,280
201209	20110630	60,181,818	4,212,720	1,396,090	5,608,810
201209	20110630	61,881,000	4,331,670	1,435,510	5,767,180
201209	20110630	52,454,545	3,671,810	1,216,830	4,888,640
201209	20110630	66,074,545	4,625,210	1,532,790	6,158,000
201209	20110630	62,454,545	4,371,810	1,448,810	5,820,620
201209	20110630	60,272,727	4,219,090	1,398,190	5,617,28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52,727,273	3,690,900	1,223,160	4,914,060
201209	20110630	20,818,182	1,457,270	482,930	1,940,200
201209	20110630	19,909,091	1,393,630	461,840	1,855,47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47,909,091	3,353,630	1,111,380	4,465,010
201209	20110630	47,909,091	3,353,630	1,111,380	4,465,010
201209	20110630	47,909,091	3,353,630	1,111,380	4,465,010
201209	20110630	14,454,545	1,011,810	335,310	1,347,120
201209	20110630	175,454,545	12,281,810	4,070,180	16,351,990
201209	20110630	31,090,910	2,176,360	721,240	2,897,60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96,364	1,868,740	619,290	2,488,03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14,454,545	1,011,810	335,310	1,347,12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630	26,636,364	1,864,540	617,900	2,482,440
201209	20110701	86,272,727	6,039,090	1,999,530	8,038,620
201209	20110704	48,818,182	3,417,270	1,128,370	4,545,640
201209	20110704	20,887,273	1,462,100	482,780	1,944,880
201209	20110704	42,832,728	2,998,290	990,020	3,988,310
201209	20110705	63,724,000	4,460,680	1,471,570	5,932,250
201209	20110705	48,818,182	3,417,270	1,127,350	4,544,620
201209	20110705	47,909,091	3,353,630	1,106,350	4,459,980
201209	20110706	62,454,545	4,371,810	1,440,940	5,812,750
201209	20110706	62,454,545	4,371,810	1,440,940	5,812,750
201209	20110707	48,545,000	3,398,150	1,119,010	4,517,160
201209	20110707	48,818,182	3,417,270	1,125,300	4,542,570
201209	20110707	244,181,818	17,092,720	5,628,620	22,721,340
201209	20110708	41,818,182	2,927,270	963,060	3,890,330
201209	20110708	54,454,000	3,811,780	1,254,060	5,065,840
201209	20110708	70,545,000	4,938,150	1,624,650	6,562,800
201209	20110711	70,545,455	4,938,180	1,620,210	6,558,390
201209	20110711	61,454,545	4,301,810	1,411,420	5,713,230
201209	20110711	61,881,000	4,331,670	1,421,210	5,752,880
201209	20110711	52,454,000	3,671,780	1,204,700	4,876,480
201209	20110711	35,593,636	2,491,550	817,470	3,309,020
201209	20110711	38,090,909	2,666,360	874,830	3,541,190
201209	20110712	60,181,000	4,212,670	1,380,900	5,593,570
201209	20110712	60,181,000	4,212,670	1,380,900	5,593,570
201209	20110712	47,909,091	3,353,630	1,099,310	4,452,940
201209	20110712	33,736,364	2,361,540	774,100	3,135,640
201209	20110713	60,181,818	4,212,720	1,379,660	5,592,380
201209	20110713	14,454,545	1,011,810	331,360	1,343,170
201209	20110714	32,618,000	2,283,260	747,080	3,030,340
201209	20110714	129,000,000	9,030,000	2,954,610	11,984,6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715	76,636,364	5,364,540	1,753,660	7,118,200
201209	20110715	61,451,818	4,301,620	1,406,190	5,707,810
201209	20110715	116,545,455	8,158,180	2,666,900	10,825,080
201209	20110715	47,000,000	3,290,000	1,075,500	4,365,500
201209	20110715	40,545,455	2,838,180	927,790	3,765,970
201209	20110715	76,636,364	5,364,540	1,753,660	7,118,200
201209	20110715	48,090,909	3,366,360	1,100,460	4,466,820
201209	20110715	245,000,000	17,150,000	5,606,330	22,756,330
201209	20110718	32,618,000	2,283,260	744,340	3,027,600
201209	20110718	47,909,091	3,353,630	1,093,270	4,446,900
201209	20110718	60,181,818	4,212,720	1,373,340	5,586,060
201209	20110718	61,881,818	4,331,720	1,412,130	5,743,850
201209	20110719	60,272,727	4,219,090	1,374,140	5,593,230
201209	20110719	48,545,455	3,398,180	1,106,780	4,504,960
201209	20110719	89,454,545	6,261,810	2,039,460	8,301,270
201209	20110719	60,181,818	4,212,720	1,372,070	5,584,790
201209	20110719	58,727,273	4,110,900	1,338,920	5,449,820
201209	20110719	25,630,000	1,794,100	584,330	2,378,430
201209	20110719	76,636,364	5,364,540	1,747,220	7,111,760
201209	20110719	89,454,545	6,261,810	2,039,460	8,301,270
201209	20110719	89,454,000	6,261,780	2,039,450	8,301,230
201209	20110720	78,344,000	5,484,080	1,784,510	7,268,590
201209	20110720	76,636,364	5,364,540	1,745,610	7,110,150
201209	20110720	76,636,364	5,364,540	1,745,610	7,110,150
201209	20110720	48,818,000	3,417,260	1,111,970	4,529,230
201209	20110720	60,181,818	4,212,720	1,370,810	5,583,530
201209	20110720	58,727,273	4,110,900	1,337,680	5,448,580
201209	20110720	44,300,000	3,101,000	1,009,060	4,110,060
201209	20110720	24,314,546	1,702,010	553,830	2,255,840
201209	20110721	47,000,000	3,290,000	1,069,570	4,359,570
201209	20110721	60,181,818	4,212,720	1,369,550	5,582,270
201209	20110721	62,181,818	4,352,720	1,415,060	5,767,780
201209	20110721	35,454,545	2,481,810	806,830	3,288,640
201209	20110722	60,181,818	4,212,720	1,368,280	5,581,000
201209	20110722	60,181,818	4,212,720	1,368,280	5,581,000
201209	20110722	59,272,727	4,149,090	1,347,610	5,496,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722	60,181,818	4,212,720	1,368,280	5,581,000
201209	20110722	81,090,909	5,676,360	1,843,670	7,520,030
201209	20110722	62,181,818	4,352,720	1,413,750	5,766,470
201209	20110722	118,000,000	8,260,000	2,682,840	10,942,840
201209	20110722	74,363,636	5,205,450	1,690,730	6,896,180
201209	20110722	46,411,818	3,248,820	1,055,210	4,304,030
201209	20110725	60,181,000	4,212,670	1,364,470	5,577,140
201209	20110725	62,090,909	4,346,360	1,407,780	5,754,140
201209	20110725	60,181,818	4,212,720	1,364,490	5,577,210
201209	20110725	47,909,091	3,353,630	1,086,230	4,439,860
201209	20110725	47,181,818	3,302,720	1,069,740	4,372,460
201209	20110725	161,363,636	11,295,450	3,658,590	14,954,040
201209	20110726	58,727,000	4,110,890	1,330,270	5,441,160
201209	20110726	60,181,000	4,212,670	1,363,210	5,575,880
201209	20110726	57,425,455	4,019,780	1,300,790	5,320,570
201209	20110726	55,590,000	3,891,300	1,259,220	5,150,520
201209	20110727	14,454,545	1,011,810	327,110	1,338,920
201209	20110727	47,636,364	3,334,540	1,078,040	4,412,580
201209	20110727	47,909,000	3,353,630	1,084,220	4,437,850
201209	20110727	76,636,364	5,364,540	1,734,340	7,098,880
201209	20110727	13,090,910	916,360	296,250	1,212,610
201209	20110728	57,090,909	3,996,360	1,290,820	5,287,180
201209	20110728	59,454,545	4,161,810	1,344,260	5,506,070
201209	20110728	70,636,364	4,944,540	1,597,070	6,541,610
201209	20110728	47,909,091	3,353,630	1,083,210	4,436,840
201209	20110728	114,272,727	7,999,090	2,583,690	10,582,780
201209	20110728	71,573,636	5,010,150	1,618,270	6,628,420
201209	20110729	58,909,000	4,123,630	1,330,680	5,454,310
201209	20110729	58,545,455	4,098,180	1,322,470	5,420,650
201209	20110729	60,181,818	4,212,720	1,359,440	5,572,160
201209	20110729	58,906,000	4,123,420	1,330,620	5,454,040
201209	20110729	70,545,455	4,938,180	1,593,540	6,531,720
201209	20110729	118,000,000	8,260,000	2,665,500	10,925,500
201209	20110729	60,181,818	4,212,720	1,359,440	5,572,160
201209	20110729	62,890,909	4,402,360	1,420,630	5,822,990
201209	20110729	213,636,000	14,954,520	4,825,810	19,780,3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729	14,454,545	1,011,810	326,500	1,338,310
201209	20110729	53,454,545	3,741,810	1,207,480	4,949,290
201209	20110729	135,467,000	9,482,690	3,060,050	12,542,740
201209	20110729	50,818,182	3,557,270	1,147,920	4,705,190
201209	20110729	133,636,000	9,354,520	3,018,690	12,373,210
201209	20110802	48,818,182	3,417,270	1,098,640	4,515,910
201209	20110802	58,727,273	4,110,900	1,321,650	5,432,550
201209	20110802	55,727,273	3,900,900	1,254,130	5,155,030
201209	20110803	60,181,818	4,212,720	1,353,120	5,565,840
201209	20110803	47,909,091	3,353,630	1,077,170	4,430,800
201209	20110804	142,034,545	9,942,410	3,190,510	13,132,920
201209	20110804	73,981,818	5,178,720	1,661,840	6,840,560
201209	20110804	60,181,818	4,212,720	1,351,850	5,564,570
201209	20110804	51,545,455	3,608,180	1,157,850	4,766,030
201209	20110805	60,909,000	4,263,630	1,366,910	5,630,540
201209	20110805	72,895,455	5,102,680	1,635,910	6,738,590
201209	20110805	60,181,818	4,212,720	1,350,590	5,563,310
201209	20110805	124,309,000	8,701,630	2,789,730	11,491,360
201209	20110808	57,390,000	4,017,300	1,284,330	5,301,630
201209	20110809	118,000,000	8,260,000	2,638,240	10,898,240
201209	20110809	60,181,818	4,212,720	1,345,530	5,558,250
201209	20110809	57,636,000	4,034,520	1,288,620	5,323,140
201209	20110809	26,522,000	1,856,540	592,970	2,449,510
201209	20110809	74,949,091	5,246,430	1,675,700	6,922,130
201209	20110810	14,454,545	1,011,810	322,860	1,334,670
201209	20110810	83,181,818	5,822,720	1,858,020	7,680,740
201209	20110810	48,818,000	3,417,260	1,090,440	4,507,700
201209	20110810	161,363,636	11,295,450	3,604,370	14,899,820
201209	20110810	62,454,000	4,371,780	1,395,020	5,766,800
201209	20110810	70,545,000	4,938,150	1,575,760	6,513,910
201209	20110810	41,090,000	2,876,300	917,820	3,794,120
201209	20110811	69,000,000	4,830,000	1,539,800	6,369,800
201209	20110811	59,636,364	4,174,540	1,330,830	5,505,370
201209	20110811	52,545,455	3,678,180	1,172,590	4,850,770
201209	20110811	123,454,545	8,641,810	2,755,000	11,396,810
201209	20110811	59,636,364	4,174,540	1,330,830	5,505,3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811	262,727,000	18,390,890	5,863,000	24,253,890
201209	20110812	93,490,727	6,544,350	2,084,370	8,628,720
201209	20110812	64,000,000	4,480,000	1,426,880	5,906,880
201209	20110812	62,454,545	4,371,810	1,392,410	5,764,220
201209	20110812	48,818,182	3,417,270	1,088,390	4,505,660
201209	20110812	26,522,727	1,856,590	591,310	2,447,900
201209	20110812	57,636,364	4,034,540	1,284,990	5,319,530
201209	20110812	71,836,364	5,028,540	1,601,580	6,630,120
201209	20110816	138,000,000	9,660,000	3,065,110	12,725,110
201209	20110817	30,936,364	2,165,540	686,460	2,852,000
201209	20110818	70,545,455	4,938,180	1,563,910	6,502,090
201209	20110818	42,090,909	2,946,360	933,110	3,879,470
201209	20110818	89,454,545	6,261,810	1,983,110	8,244,920
201209	20110819	35,363,636	2,475,450	783,230	3,258,680
201209	20110819	158,818,000	11,117,260	3,517,490	14,634,750
201209	20110819	56,909,091	3,983,630	1,260,410	5,244,040
201209	20110822	28,290,909	1,980,360	624,800	2,605,160
201209	20110822	28,249,092	1,977,430	623,870	2,601,300
201209	20110823	129,272,000	9,049,040	2,852,240	11,901,280
201209	20110823	71,584,545	5,010,910	1,579,430	6,590,340
201209	20110824	14,454,545	1,011,810	318,610	1,330,420
201209	20110824	50,910,000	3,563,700	1,122,200	4,685,900
201209	20110825	12,818,182	897,270	282,270	1,179,540
201209	20110826	62,454,545	4,371,810	1,374,050	5,745,860
201209	20110826	14,454,545	1,011,810	318,000	1,329,810
201209	20110826	52,909,091	3,703,630	1,164,040	4,867,670
201209	20110829	46,584,545	3,260,910	1,021,960	4,282,870
201209	20110830	62,454,545	4,371,810	1,368,810	5,740,620
201209	20110831	123,136,364	8,619,540	2,696,180	11,315,720
201209	20110831	71,584,545	5,010,910	1,567,410	6,578,320
201209	20110831	52,727,273	3,690,900	1,154,510	4,845,410
201209	20110831	31,727,273	2,220,900	694,690	2,915,590
201209	20110831	53,634,364	3,754,400	1,174,370	4,928,770
201209	20110901	31,727,273	2,220,900	694,030	2,914,930
201209	20110902	17,773,637	1,244,150	388,420	1,632,570
201209	20110905	21,628,182	1,513,970	471,290	1,985,2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54,454,545	3,811,810	1,184,320	4,996,13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181,182	922,680	286,670	1,209,35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7	13,818,182	967,270	300,520	1,267,790
201209	20110908	44,090,909	3,086,360	958,000	4,044,360
201209	20110908	49,074,546	2,453,720	761,630	3,215,350
201209	20110909	26,930,909	1,885,160	584,580	2,469,740
201209	20110909	35,593,636	2,491,550	772,620	3,264,170
201209	20110916	114,272,727	7,999,090	2,463,710	10,462,800
201209	20110916	24,355,456	1,704,880	525,090	2,229,970
201209	20110916	96,909,091	6,783,630	2,089,350	8,872,980
201209	20110919	97,727,273	6,840,900	2,100,840	8,941,740
201209	20110920	97,727,273	6,840,900	2,098,780	8,939,680
201209	20110920	30,363,636	2,125,450	652,080	2,777,530
201209	20110922	33,528,182	2,346,970	718,630	3,065,600
201209	20110927	43,909,091	3,073,630	936,520	4,010,150
201209	20110928	19,000,000	1,330,000	404,850	1,734,850
201209	20110929	52,272,727	3,659,090	1,112,720	4,771,810
201209	20110930	140,454,545	9,831,810	2,986,900	12,818,710
201209	20110930	62,454,545	4,371,810	1,328,150	5,699,960
201209	20110930	71,545,455	5,008,180	1,521,470	6,529,650
201209	20110930	49,685,454	3,477,980	1,056,600	4,534,580
201209	20111013	67,636,364	4,734,540	1,419,880	6,154,420
201209	20111014	31,727,273	2,220,900	665,380	2,886,280
201209	20111025	36,107,273	2,527,500	748,890	3,276,390
201209	20111026	63,363,636	4,435,450	1,312,890	5,748,340
201209	20111026	56,090,000	3,926,300	1,162,180	5,088,480
201209	20111028	13,724,546	960,710	283,790	1,244,500
201209	20111028	16,860,909	1,180,260	348,640	1,528,9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031	36,641,818	2,564,920	755,360	3,320,280
201209	20111031	62,545,455	4,378,180	1,289,360	5,667,540
201209	20111031	54,454,000	3,811,780	1,122,560	4,934,340
201209	20111031	34,636,000	2,424,520	714,010	3,138,530
201209	20111103	6,346,363	444,240	130,420	574,660
201209	20111109	38,652,728	2,705,690	789,510	3,495,200
201209	20111111	51,126,364	3,578,840	1,042,150	4,620,990
201209	20111111	71,545,455	5,008,180	1,458,370	6,466,550
201209	20111115	99,272,000	6,949,040	2,015,210	8,964,250
201209	20111116	54,454,545	3,811,810	1,104,270	4,916,080
201209	20111116	153,545,000	10,748,150	3,113,730	13,861,880
201209	20111117	114,272,000	7,999,040	2,314,910	10,313,950
201209	20111117	44,982,727	3,148,790	911,250	4,060,040
201209	20111118	35,368,182	2,475,770	715,740	3,191,510
201209	20111123	15,179,091	1,062,530	305,570	1,368,100
201209	20111123	55,539,090	3,887,730	1,118,100	5,005,830
201209	20111124	70,090,909	4,906,360	1,409,590	6,315,950
201209	20111124	32,700,000	2,289,000	657,620	2,946,620
201209	20111124	130,272,727	9,119,090	2,619,900	11,738,990
201209	20111124	58,245,455	4,077,180	1,171,360	5,248,540
201209	20111125	70,090,000	4,906,300	1,408,100	6,314,400
201209	20111125	41,153,091	2,880,710	826,760	3,707,470
201209	20111125	62,545,455	4,378,180	1,256,530	5,634,710
201209	20111128	25,119,091	1,758,330	503,050	2,261,380
201209	20111128	32,091,819	2,246,420	642,690	2,889,110
201209	20111129	67,636,364	4,734,540	1,353,120	6,087,660
201209	20111129	166,090,909	11,626,360	3,322,810	14,949,170
201209	20111129	39,436,364	2,760,540	788,950	3,549,490
201209	20111130	59,000,000	4,130,000	1,179,110	5,309,110
201209	20111130	62,545,455	4,378,180	1,249,960	5,628,140
201209	20111130	76,272,727	5,339,090	1,524,300	6,863,390
201209	20111130	28,260,000	1,978,200	564,770	2,542,970
201209	20111130	84,454,000	5,911,780	1,687,800	7,599,580
201209	20111130	72,181,818	5,052,720	1,442,540	6,495,260
201209	20111130	40,600,000	2,842,000	811,390	3,653,390
201209	20111201	35,736,364	2,501,540	713,430	3,214,9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207	45,454,546	3,181,810	901,720	4,083,530
201209	20111207	137,181,818	9,602,720	2,721,400	12,324,120
201209	20111207	85,272,727	5,969,090	1,691,630	7,660,720
201209	20111208	65,181,000	4,562,670	1,291,680	5,854,350
201209	20111212	25,706,363	1,799,440	507,250	2,306,690
201209	20111212	29,317,273	2,052,200	578,510	2,630,710
201209	20111213	19,711,819	1,379,820	388,550	1,768,370
201209	20111215	62,181,000	4,352,670	1,223,090	5,575,760
201209	20111216	36,137,273	2,529,600	710,050	3,239,650
201209	20111216	45,531,819	3,187,220	894,640	4,081,860
201209	20111222	122,636,364	8,584,540	2,394,220	10,978,760
201209	20111222	72,181,818	5,052,720	1,409,190	6,461,910
201209	20111222	61,300,000	4,291,000	1,196,750	5,487,750
201209	20111222	21,617,910	1,513,250	422,040	1,935,290
201209	20111222	75,903,636	5,313,250	1,481,860	6,795,110
201209	20111223	77,818,182	5,447,270	1,517,600	6,964,870
201209	20111227	70,090,909	4,906,360	1,361,020	6,267,380
201209	20111227	92,209,091	6,454,630	1,790,500	8,245,130
201209	20111228	29,684,545	2,077,910	575,780	2,653,690
201209	20111230	58,090,909	4,066,360	1,124,340	5,190,700
201209	20120102	77,545,455	5,428,180	1,496,000	6,924,180
201209	20120102	105,909,091	7,413,630	2,043,190	9,456,820
201209	20120102	62,545,455	4,378,180	1,206,620	5,584,800
201209	20120102	62,545,455	4,378,180	1,206,620	5,584,800
201209	20120102	22,947,272	1,606,300	442,690	2,048,990
201209	20120103	40,545,455	2,838,180	781,340	3,619,520
201209	20120103	62,454,455	4,371,810	1,203,550	5,575,360
201209	20120103	58,545,455	4,098,180	1,128,220	5,226,400
201209	20120103	61,272,727	4,289,090	1,180,770	5,469,860
201209	20120103	59,000,000	4,130,000	1,136,980	5,266,980
201209	20120103	65,545,455	4,588,180	1,263,110	5,851,290
201209	20120104	62,545,455	4,378,180	1,203,990	5,582,170
201209	20120106	35,588,182	2,491,170	683,570	3,174,740
201209	20110812	175,909,091	12,313,630	3,921,880	16,235,510
201209	20110812	175,909,091	12,313,630	3,921,880	16,235,510
201209	20110825	89,454,000	6,261,780	1,969,940	8,231,7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825	89,454,000	6,261,780	1,969,940	8,231,720
201209	20110826	116,818,182	8,177,270	2,570,110	10,747,380
201209	20110826	35,363,636	2,475,450	778,030	3,253,480
201209	20110826	42,090,909	2,946,360	926,030	3,872,390
201209	20110826	175,454,545	12,281,810	3,860,170	16,141,980
201209	20110829	89,454,000	6,261,780	1,962,430	8,224,210
201209	20110830	59,636,364	4,174,540	1,307,040	5,481,580
201209	20110831	26,522,000	1,856,540	580,710	2,437,250
201209	20110831	135,727,273	9,500,900	2,971,880	12,472,780
201209	20110831	135,727,273	9,500,900	2,971,880	12,472,780
201209	20110902	48,818,182	3,417,270	1,066,860	4,484,130
201209	20110902	97,727,000	6,840,890	2,135,710	8,976,600
201209	20110902	114,272,000	7,999,040	2,497,290	10,496,330
201209	20110902	47,909,091	3,353,630	1,046,990	4,400,620
201209	20110902	59,818,182	4,187,270	1,307,260	5,494,530
201209	20110902	48,818,182	3,417,270	1,066,860	4,484,130
201209	20110905	85,818,182	6,007,270	1,870,050	7,877,320
201209	20110905	47,909,091	3,353,630	1,043,970	4,397,600
201209	20110906	142,727,273	9,990,900	3,107,160	13,098,060
201209	20110906	76,636,364	5,364,540	1,668,360	7,032,900
201209	20110906	48,818,182	3,417,270	1,062,760	4,480,030
201209	20110906	52,727,273	3,690,900	1,147,860	4,838,760
201209	20110906	60,909,091	4,263,630	1,325,980	5,589,610
201209	20110908	122,818,182	8,597,270	2,668,580	11,265,850
201209	20110908	62,454,545	4,371,810	1,357,000	5,728,810
201209	20110908	89,454,545	6,261,810	1,943,660	8,205,470
201209	20110908	62,454,545	4,371,810	1,357,000	5,728,810
201209	20110909	83,181,818	5,822,720	1,805,620	7,628,340
201209	20110909	97,727,273	6,840,900	2,121,360	8,962,260
201209	20110909	56,909,091	3,983,630	1,235,310	5,218,940
201209	20110909	48,818,182	3,417,270	1,059,690	4,476,960
201209	20110914	39,181,000	2,742,670	846,380	3,589,050
201209	20110914	94,181,818	6,592,720	2,034,500	8,627,220
201209	20110914	121,090,909	8,476,360	2,615,800	11,092,160
201209	20110914	53,727,273	3,760,900	1,160,610	4,921,510
201209	20110916	85,454,545	5,981,810	1,842,390	7,824,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916	59,272,727	4,149,090	1,277,910	5,427,000
201209	20110916	56,354,545	3,944,810	1,214,990	5,159,800
201209	20110916	194,727,273	13,630,900	4,198,310	17,829,210
201209	20110919	59,181,818	4,142,720	1,272,220	5,414,940
201209	20110920	62,181,818	4,352,720	1,335,410	5,688,130
201209	20110920	97,727,273	6,840,900	2,098,780	8,939,680
201209	20110920	97,727,273	6,840,900	2,098,780	8,939,680
201209	20110920	47,909,091	3,353,630	1,028,880	4,382,510
201209	20110921	97,727,273	6,840,900	2,096,730	8,937,630
201209	20110921	48,818,182	3,417,270	1,047,380	4,464,650
201209	20110922	42,090,909	2,946,360	902,170	3,848,530
201209	20110922	61,425,455	4,299,780	1,316,580	5,616,360
201209	20110923	47,909,091	3,353,630	1,025,860	4,379,490
201209	20110923	97,727,273	6,840,900	2,092,630	8,933,530
201209	20110923	97,727,273	6,840,900	2,092,630	8,933,530
201209	20110923	48,818,182	3,417,270	1,045,330	4,462,600
201209	20110923	97,727,273	6,840,900	2,092,630	8,933,530
201209	20110926	47,909,091	3,353,630	1,022,850	4,376,480
201209	20110927	46,818,182	3,277,270	998,580	4,275,850
201209	20110928	97,727,273	6,840,900	2,082,360	8,923,260
201209	20110928	59,363,636	4,155,450	1,264,910	5,420,360
201209	20110928	66,053,636	4,623,750	1,407,460	6,031,210
201209	20110929	97,727,273	6,840,900	2,080,310	8,921,210
201209	20110929	97,727,273	6,840,900	2,080,310	8,921,210
201209	20110929	47,909,091	3,353,630	1,019,830	4,373,460
201209	20110929	48,818,182	3,417,270	1,039,180	4,456,450
201209	20110929	47,909,091	3,353,630	1,019,830	4,373,460
201209	20110929	48,818,182	3,417,270	1,039,180	4,456,450
201209	20110929	48,818,182	3,417,270	1,039,180	4,456,450
201209	20110929	79,454,545	5,561,810	1,691,340	7,253,150
201209	20110929	42,090,909	2,946,360	895,980	3,842,340
201209	20110930	60,181,818	4,212,720	1,279,820	5,492,540
201209	20110930	97,727,273	6,840,900	2,078,260	8,919,160
201209	20110930	97,727,273	6,840,900	2,078,260	8,919,160
201209	20110930	47,909,091	3,353,630	1,018,820	4,372,450
201209	20110930	97,727,273	6,840,900	2,078,260	8,919,1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0930	97,727,273	6,840,900	2,078,260	8,919,160
201209	20110930	116,090,909	8,126,360	2,468,780	10,595,140
201209	20110930	97,454,545	6,821,810	2,072,460	8,894,270
201209	20110930	71,090,909	4,976,360	1,511,810	6,488,170
201209	20110930	71,090,909	4,976,360	1,511,810	6,488,170
201209	20110930	71,090,909	4,976,360	1,511,810	6,488,170
201209	20110930	71,090,909	4,976,360	1,511,810	6,488,170
201209	20110930	74,363,636	5,205,450	1,581,410	6,786,860
201209	20110930	126,090,909	8,826,360	2,681,440	11,507,800
201209	20110930	63,363,636	4,435,450	1,347,480	5,782,930
201209	20110930	60,181,818	4,212,720	1,279,820	5,492,540
201209	20111004	47,909,091	3,353,630	1,014,800	4,368,430
201209	20111004	47,909,091	3,353,630	1,014,800	4,368,430
201209	20111004	61,090,909	4,276,360	1,294,020	5,570,380
201209	20111005	47,909,091	3,353,630	1,013,790	4,367,420
201209	20111005	62,454,545	4,371,810	1,321,590	5,693,400
201209	20111007	119,909,091	8,393,630	2,532,350	10,925,980
201209	20111010	59,636,364	4,174,540	1,255,690	5,430,230
201209	20111011	63,363,636	4,435,450	1,332,850	5,768,300
201209	20111011	63,363,636	4,435,450	1,332,850	5,768,300
201209	20111012	40,909,090	2,863,630	859,650	3,723,280
201209	20111012	42,090,909	2,946,360	884,490	3,830,850
201209	20111012	60,909,091	4,263,630	1,279,930	5,543,560
201209	20111012	48,818,182	3,417,270	1,025,860	4,443,130
201209	20111013	171,090,909	11,976,360	3,591,700	15,568,060
201209	20111013	61,090,909	4,276,360	1,282,470	5,558,830
201209	20111014	63,363,636	4,435,450	1,328,860	5,764,310
201209	20111014	63,363,636	4,435,450	1,328,860	5,764,310
201209	20111014	48,818,182	3,417,270	1,023,810	4,441,080
201209	20111014	47,454,545	3,321,810	995,210	4,317,020
201209	20111014	63,363,636	4,435,450	1,328,860	5,764,310
201209	20111014	63,363,636	4,435,450	1,328,860	5,764,310
201209	20111017	48,818,182	3,417,270	1,020,730	4,438,000
201209	20111017	60,181,818	4,212,720	1,258,330	5,471,050
201209	20111017	60,181,818	4,212,720	1,258,330	5,471,050
201209	20111017	125,529,091	8,787,030	2,624,670	11,411,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018	63,363,636	4,435,450	1,323,530	5,758,980
201209	20111018	48,818,182	3,417,270	1,019,700	4,436,970
201209	20111019	97,727,273	6,840,900	2,039,270	8,880,170
201209	20111019	48,818,182	3,417,270	1,018,680	4,435,950
201209	20111019	63,363,636	4,435,450	1,322,200	5,757,650
201209	20111019	74,363,636	5,205,450	1,551,740	6,757,190
201209	20111019	114,272,727	7,999,090	2,384,520	10,383,610
201209	20111020	66,443,636	4,651,050	1,385,080	6,036,130
201209	20111020	48,818,182	3,417,270	1,017,650	4,434,920
201209	20111020	48,818,182	3,417,270	1,017,650	4,434,920
201209	20111020	64,523,636	4,516,650	1,345,050	5,861,700
201209	20111020	63,363,636	4,435,450	1,320,870	5,756,320
201209	20111020	63,363,636	4,435,450	1,320,870	5,756,320
201209	20111021	63,363,636	4,435,450	1,319,540	5,754,990
201209	20111021	61,090,909	4,276,360	1,272,210	5,548,570
201209	20111021	63,363,636	4,435,450	1,319,540	5,754,990
201209	20111021	63,363,636	4,435,450	1,319,540	5,754,990
201209	20111021	47,909,091	3,353,630	997,690	4,351,320
201209	20111021	60,909,091	4,263,630	1,268,420	5,532,050
201209	20111021	61,451,818	4,301,620	1,279,720	5,581,340
201209	20111021	61,451,818	4,301,620	1,279,720	5,581,340
201209	20111024	63,363,636	4,435,450	1,315,550	5,751,000
201209	20111025	55,818,182	3,907,270	1,157,720	5,064,990
201209	20111025	54,454,545	3,811,810	1,129,430	4,941,240
201209	20111025	120,818,182	8,457,270	2,505,880	10,963,150
201209	20111026	63,363,636	4,435,450	1,312,890	5,748,340
201209	20111026	63,363,636	4,435,450	1,312,890	5,748,340
201209	20111027	160,424,545	11,229,710	3,320,620	14,550,330
201209	20111027	63,363,636	4,435,450	1,311,560	5,747,010
201209	20111027	63,363,636	4,435,450	1,311,560	5,747,010
201209	20111027	60,181,818	4,212,720	1,245,690	5,458,410
201209	20111027	54,454,545	3,811,810	1,127,150	4,938,960
201209	20111028	97,727,273	6,840,900	2,020,800	8,861,700
201209	20111028	63,363,636	4,435,450	1,310,230	5,745,680
201209	20111028	47,909,091	3,353,630	990,650	4,344,280
201209	20111031	63,363,636	4,435,450	1,306,240	5,741,6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031	63,363,636	4,435,450	1,306,240	5,741,690
201209	20111031	85,818,182	6,007,270	1,769,130	7,776,400
201209	20111031	63,363,636	4,435,450	1,306,240	5,741,690
201209	20111031	53,727,273	3,760,900	1,107,580	4,868,480
201209	20111101	61,090,909	4,276,360	1,258,100	5,534,460
201209	20111101	63,363,636	4,435,450	1,304,900	5,740,350
201209	20111101	142,034,545	9,942,410	2,925,050	12,867,460
201209	20111101	43,090,910	3,016,360	887,410	3,903,770
201209	20111101	47,909,091	3,353,630	986,630	4,340,260
201209	20111101	48,818,182	3,417,270	1,005,350	4,422,620
201209	20111102	63,363,636	4,435,450	1,303,570	5,739,020
201209	20111102	164,709,091	11,529,630	3,388,550	14,918,180
201209	20111103	61,090,909	4,276,360	1,255,530	5,531,890
201209	20111103	140,454,545	9,831,810	2,886,610	12,718,420
201209	20111103	63,363,636	4,435,450	1,302,240	5,737,690
201209	20111103	63,363,636	4,435,450	1,302,240	5,737,690
201209	20111104	146,694,545	10,268,610	3,011,780	13,280,390
201209	20111104	61,090,909	4,276,360	1,254,250	5,530,610
201209	20111107	63,363,636	4,435,450	1,296,920	5,732,370
201209	20111108	58,727,273	4,110,900	1,200,790	5,311,690
201209	20111109	245,000,000	17,150,000	5,004,370	22,154,370
201209	20111109	63,363,636	4,435,450	1,294,260	5,729,710
201209	20111110	63,363,636	4,435,450	1,292,930	5,728,380
201209	20111110	60,181,818	4,212,720	1,228,000	5,440,720
201209	20111110	54,454,545	3,811,810	1,111,140	4,922,950
201209	20111110	22,636,364	1,584,540	461,880	2,046,420
201209	20111111	63,363,636	4,435,450	1,291,600	5,727,050
201209	20111111	63,363,636	4,435,450	1,291,600	5,727,050
201209	20111114	39,454,545	2,761,810	801,750	3,563,560
201209	20111115	47,909,091	3,353,630	972,540	4,326,170
201209	20111115	45,727,273	3,200,900	928,260	4,129,160
201209	20111115	142,766,364	9,993,640	2,898,140	12,891,780
201209	20111115	97,727,273	6,840,900	1,983,860	8,824,760
201209	20111115	168,181,819	11,772,720	3,414,080	15,186,800
201209	20111116	142,034,545	9,942,410	2,880,310	12,822,720
201209	20111116	48,818,182	3,417,270	989,970	4,407,2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116	66,443,636	4,651,050	1,347,400	5,998,450
201209	20111117	48,818,182	3,417,270	988,950	4,406,220
201209	20111117	63,363,636	4,435,450	1,283,610	5,719,060
201209	20111117	63,363,636	4,435,450	1,283,610	5,719,060
201209	20111118	42,090,909	2,946,360	851,790	3,798,150
201209	20111118	64,093,636	4,486,550	1,297,060	5,783,610
201209	20111118	63,363,636	4,435,450	1,282,280	5,717,730
201209	20111118	129,272,727	9,049,090	2,616,080	11,665,170
201209	20111118	52,454,545	3,671,810	1,061,510	4,733,320
201209	20111121	60,545,455	4,238,180	1,221,430	5,459,610
201209	20111121	60,181,818	4,212,720	1,214,100	5,426,820
201209	20111121	179,545,455	12,568,180	3,622,140	16,190,320
201209	20111122	58,694,545	4,108,610	1,182,860	5,291,470
201209	20111122	97,727,273	6,840,900	1,969,490	8,810,390
201209	20111122	60,909,091	4,263,630	1,227,490	5,491,120
201209	20111122	140,454,000	9,831,780	2,830,560	12,662,340
201209	20111123	179,545,455	12,568,180	3,614,600	16,182,780
201209	20111123	63,363,636	4,435,450	1,275,630	5,711,080
201209	20111123	97,727,273	6,840,900	1,967,440	8,808,340
201209	20111124	83,181,818	5,822,720	1,672,860	7,495,580
201209	20111124	116,090,909	8,126,360	2,334,700	10,461,060
201209	20111124	121,090,909	8,476,360	2,435,250	10,911,610
201209	20111124	48,818,182	3,417,270	981,770	4,399,040
201209	20111124	46,636,364	3,264,540	937,890	4,202,430
201209	20111124	45,727,273	3,200,900	919,610	4,120,510
201209	20111124	32,332,727	2,263,290	650,230	2,913,520
201209	20111125	131,090,909	9,176,360	2,633,610	11,809,970
201209	20111125	140,454,545	9,831,810	2,821,720	12,653,530
201209	20111125	63,363,636	4,435,450	1,272,970	5,708,420
201209	20111125	57,636,364	4,034,540	1,157,900	5,192,440
201209	20111125	60,181,818	4,212,720	1,209,040	5,421,760
201209	20111125	63,363,636	4,435,450	1,272,970	5,708,420
201209	20111125	63,793,636	4,465,550	1,281,610	5,747,160
201209	20111125	63,363,636	4,435,450	1,272,970	5,708,420
201209	20111125	62,545,455	4,378,180	1,256,530	5,634,710
201209	20111128	63,363,636	4,435,450	1,268,980	5,704,4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129	114,272,727	7,999,090	2,286,130	10,285,220
201209	20111129	196,417,273	13,749,200	3,929,520	17,678,720
201209	20111129	63,363,636	4,435,450	1,267,650	5,703,100
201209	20111129	47,909,091	3,353,630	958,460	4,312,090
201209	20111129	62,545,000	4,378,150	1,251,270	5,629,420
201209	20111130	76,272,000	5,339,040	1,524,280	6,863,320
201209	20111130	112,090,909	7,846,360	2,240,130	10,086,490
201209	20111201	47,909,091	3,353,630	956,440	4,310,070
201209	20111201	47,909,091	3,353,630	956,440	4,310,070
201209	20111201	48,818,182	3,417,270	974,600	4,391,870
201209	20111201	60,181,818	4,212,720	1,201,460	5,414,180
201209	20111202	47,909,091	3,353,630	955,440	4,309,070
201209	20111202	45,818,182	3,207,270	913,740	4,121,010
201209	20111202	63,363,636	4,435,450	1,263,650	5,699,100
201209	20111202	63,363,636	4,435,450	1,263,650	5,699,100
201209	20111206	32,332,727	2,263,290	642,080	2,905,370
201209	20111206	63,363,636	4,435,450	1,258,330	5,693,780
201209	20111206	75,009,091	5,250,630	1,489,590	6,740,220
201209	20111207	175,909,091	12,313,630	3,489,670	15,803,300
201209	20111208	175,909,091	12,313,630	3,485,980	15,799,610
201209	20111209	63,363,636	4,435,450	1,254,340	5,689,790
201209	20111209	63,363,636	4,435,450	1,254,340	5,689,790
201209	20111209	47,909,091	3,353,630	948,400	4,302,030
201209	20111212	63,363,636	4,435,450	1,250,350	5,685,800
201209	20111213	99,267,273	6,948,700	1,956,750	8,905,450
201209	20111213	73,181,818	5,122,720	1,442,550	6,565,270
201209	20111214	63,363,636	4,435,450	1,247,690	5,683,140
201209	20111214	83,181,819	5,822,720	1,637,920	7,460,640
201209	20111214	57,818,182	4,047,270	1,138,490	5,185,760
201209	20111215	63,793,636	4,465,550	1,254,810	5,720,360
201209	20111215	63,363,636	4,435,450	1,246,360	5,681,810
201209	20111215	54,454,545	3,811,810	1,071,110	4,882,920
201209	20111216	53,727,273	3,760,900	1,055,680	4,816,580
201209	20111216	63,363,636	4,435,450	1,245,030	5,680,480
201209	20111216	129,272,727	9,049,090	2,540,070	11,589,160
201209	20111219	42,090,909	2,946,360	824,380	3,770,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219	175,909,091	12,313,630	3,445,340	15,758,970
201209	20111220	54,454,545	3,811,810	1,065,390	4,877,200
201209	20111220	99,267,273	6,948,700	1,942,160	8,890,860
201209	20111220	63,363,636	4,435,450	1,239,700	5,675,150
201209	20111220	48,818,182	3,417,270	955,120	4,372,390
201209	20111220	48,818,182	3,417,270	955,120	4,372,390
201209	20111220	44,727,273	3,130,900	875,080	4,005,980
201209	20111221	263,636,364	18,454,540	5,152,490	23,607,030
201209	20111222	97,727,273	6,840,900	1,907,920	8,748,820
201209	20111222	63,363,636	4,435,450	1,237,040	5,672,490
201209	20111222	74,363,636	5,205,450	1,451,800	6,657,250
201209	20111222	90,363,636	6,325,450	1,764,160	8,089,610
201209	20111222	60,181,818	4,212,720	1,174,920	5,387,640
201209	20111222	112,545,455	7,878,180	2,197,210	10,075,390
201209	20111223	48,818,182	3,417,270	952,040	4,369,310
201209	20111223	61,090,909	4,276,360	1,191,390	5,467,750
201209	20111223	64,093,636	4,486,550	1,249,950	5,736,500
201209	20111223	42,727,273	2,990,900	833,260	3,824,160
201209	20111226	129,000,000	9,030,000	2,507,630	11,537,630
201209	20111227	53,727,273	3,760,900	1,043,270	4,804,170
201209	20111227	95,454,545	6,681,810	1,853,530	8,535,340
201209	20111228	63,793,636	4,465,550	1,237,400	5,702,950
201209	20111228	48,818,182	3,417,270	946,920	4,364,190
201209	20111228	63,793,636	4,465,550	1,237,400	5,702,950
201209	20111228	97,727,273	6,840,900	1,895,610	8,736,510
201209	20111228	52,545,455	3,678,180	1,019,210	4,697,390
201209	20111228	145,454,546	10,181,810	2,821,370	13,003,180
201209	20111229	99,267,273	6,948,700	1,923,400	8,872,100
201209	20111229	63,793,636	4,465,550	1,236,060	5,701,610
201209	20111229	40,181,818	2,812,720	778,550	3,591,270
201209	20111229	48,181,819	3,372,720	933,560	4,306,280
201209	20111230	45,727,273	3,200,900	885,040	4,085,940
201209	20111230	58,363,636	4,085,450	1,129,620	5,215,070
201209	20111230	97,449,091	6,821,430	1,886,110	8,707,540
201209	20111230	161,804,545	11,326,310	3,131,720	14,458,030
201209	20111230	64,093,636	4,486,550	1,240,530	5,727,0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	20111230	48,818,182	3,417,270	944,870	4,362,140
201209	20111230	90,363,636	6,325,450	1,748,980	8,074,430
201209	20111230	129,000,000	9,030,000	2,496,790	11,526,790
201209	20111230	131,090,909	9,176,360	2,537,260	11,713,620
201209	20111230	121,090,909	8,476,360	2,343,710	10,820,070
201209	20111230	47,909,091	3,353,630	927,270	4,280,900
201209	20111230	60,181,818	4,212,720	1,164,810	5,377,530
201209	20111230	179,545,455	12,568,180	3,475,090	16,043,270
201209	20111230	81,181,818	5,682,720	1,571,260	7,253,980
201209	20111230	51,363,636	3,595,450	994,140	4,589,590
201209	20111230	60,181,818	4,212,720	1,164,810	5,377,530
201209	20111230	47,909,091	3,353,630	927,270	4,280,900
201209	20120102	97,727,273	6,840,900	1,885,350	8,726,250
201209	20120102	53,727,273	3,760,900	1,036,500	4,797,400
201209	20120103	99,267,273	6,948,700	1,912,970	8,861,670
201209	20120104	97,727,273	6,840,900	1,881,240	8,722,140
201209	20120104	179,545,455	12,568,180	3,456,240	16,024,420
201209	20120104	107,127,273	7,498,900	2,062,190	9,561,090
201209	20120104	63,545,455	4,448,180	1,223,240	5,671,420
201209	20120105	62,181,818	4,352,720	1,195,680	5,548,400
201209	20120105	48,818,182	3,417,270	938,720	4,355,990
201209	20120106	60,181,818	4,212,720	1,155,960	5,368,680
201209	20120106	141,363,636	9,895,450	2,715,310	12,610,760
201209	20120106	63,545,455	4,448,180	1,220,570	5,668,750
합계		95,191,515,727	6,661,873,270	2,210,834,220	8,872,707,49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

처분 목록(서초구청장)

(단위:원)

처분일	취득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20930	20120117	49,545,455	3,468,180	940,210	4,408,390
20120930	20120117	42,545,455	2,978,180	807,370	3,785,550
20120930	20120117	37,000,000	2,590,000	702,140	3,292,140
20120930	20120117	74,727,273	5,230,900	1,418,090	6,648,990
20120930	20120117	62,193,636	4,353,550	1,180,240	5,533,790
20120930	20120118	60,636,364	4,244,540	1,149,410	5,393,950
20120930	20120118	52,636,364	3,684,540	997,760	4,682,300
20120930	20120430	63,181,818	4,422,720	1,061,000	5,483,720
20120930	20120430	112,112,727	7,847,890	1,882,700	9,730,590
20120930	20120502	62,545,455	4,378,180	1,047,690	5,425,870
20120930	20120502	58,818,182	4,117,270	985,250	5,102,520
20120930	20120502	84,363,636	5,905,450	1,413,170	7,318,620
20120930	20120502	48,363,636	3,385,450	810,130	4,195,580
20120930	20120503	59,727,273	4,180,900	999,230	5,180,130
20120930	20120503	51,363,636	3,595,450	859,310	4,454,760
20120930	20120503	37,727,273	2,640,900	631,170	3,272,070
20120930	20120503	48,363,636	3,385,450	809,120	4,194,570
20120930	20120119	49,545,455	3,468,180	938,130	4,406,310
20120930	20120119	49,545,455	3,468,180	938,130	4,406,310
20120930	20120119	62,181,818	4,352,720	1,177,400	5,530,120
20120930	20120119	81,181,818	5,682,720	1,537,170	7,219,890
20120930	20120119	141,363,636	9,895,450	2,676,710	12,572,160
20120930	20120119	3,636,364	254,540	68,840	323,380
20120930	20120119	32,000,000	2,240,000	605,920	2,845,920
20120930	20120119	62,193,636	4,353,550	1,177,630	5,531,180
20120930	20120120	53,636,364	3,754,540	1,014,460	4,769,000
20120930	20120120	71,000,000	4,970,000	1,342,890	6,312,890
20120930	20120120	85,818,182	6,007,270	1,623,160	7,630,430
20120930	20120120	51,363,636	3,595,450	971,490	4,566,940
20120930	20120120	26,818,000	1,877,260	507,230	2,384,490
20120930	20120125	98,181,818	6,872,720	1,846,690	8,719,410
20120930	20120125	115,000,000	8,050,000	2,163,030	10,213,0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125	131,818,000	9,227,260	2,479,360	11,706,620
20120930	20120125	80,000,000	5,600,000	1,504,720	7,104,720
20120930	20120126	29,909,000	2,093,630	561,920	2,655,550
20120930	20120126	54,454,545	3,811,810	1,023,080	4,834,890
20120930	20120126	60,181,818	4,212,720	1,130,690	5,343,410
20120930	20120126	71,818,000	5,027,260	1,349,310	6,376,570
20120930	20120126	36,545,000	2,558,150	686,600	3,244,750
20120930	20120127	35,363,636	2,475,450	663,660	3,139,110
20120930	20120127	64,695,455	4,528,680	1,214,130	5,742,810
20120930	20120510	32,745,455	2,292,180	543,010	2,835,190
20120930	20120510	30,106,364	2,107,440	499,240	2,606,680
20120930	20120510	79,681,818	5,577,720	1,321,350	6,899,070
20120930	20120510	90,720,000	6,350,400	1,504,400	7,854,800
20120930	20120511	45,181,818	3,162,720	748,290	3,911,010
20120930	20120511	56,454,545	3,951,810	934,990	4,886,800
20120930	20120127	45,000,000	3,150,000	844,510	3,994,510
20120930	20120127	98,181,818	6,872,720	1,842,570	8,715,290
20120930	20120127	85,818,182	6,007,270	1,610,540	7,617,810
20120930	20120127	64,093,636	4,486,550	1,202,840	5,689,390
20120930	20120127	54,545,000	3,818,150	1,023,640	4,841,790
20120930	20120130	48,363,636	3,385,450	904,590	4,290,040
20120930	20120130	98,181,818	6,872,720	1,836,380	8,709,100
20120930	20120130	110,818,182	7,757,270	2,072,730	9,830,000
20120930	20120130	114,545,000	8,018,150	2,142,440	10,160,590
20120930	20120130	54,636,000	3,824,520	1,021,900	4,846,420
20120930	20120130	126,545,455	8,858,180	2,366,890	11,225,070
20120930	20120131	409,090,909	28,636,360	7,643,040	36,279,400
20120930	20120131	131,727,273	9,220,900	2,461,050	11,681,950
20120930	20120131	48,363,636	3,385,450	903,570	4,289,020
20120930	20120131	106,363,000	7,445,410	1,987,170	9,432,580
20120930	20120131	57,181,000	4,002,670	1,068,300	5,070,970
20120930	20120131	74,727,273	5,230,900	1,396,120	6,627,020
20120930	20120131	39,090,910	2,736,360	730,330	3,466,690
20120930	20120201	48,363,636	3,385,450	902,560	4,288,010
20120930	20120201	74,727,273	5,230,900	1,394,550	6,625,450
20120930	20120503	62,545,455	4,378,180	1,046,370	5,424,5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503	24,000,000	1,680,000	401,520	2,081,520
20120930	20120504	70,000,000	4,900,000	1,169,630	6,069,630
20120930	20120504	99,545,455	6,968,180	1,663,290	8,631,470
20120930	20120504	84,363,636	5,905,450	1,409,630	7,315,080
20120930	20120504	59,272,727	4,149,090	990,370	5,139,460
20120930	20120504	37,411,818	2,618,820	625,100	3,243,920
20120930	20120507	72,000,000	5,040,000	1,198,510	6,238,510
20120930	20120507	80,909,000	5,663,630	1,346,800	7,010,430
20120930	20120508	59,272,727	4,149,090	985,400	5,134,490
20120930	20120508	96,030,000	6,722,100	1,596,490	8,318,590
20120930	20120508	37,000,000	2,590,000	615,120	3,205,120
20120930	20120508	53,181,818	3,722,720	884,140	4,606,860
20120930	20120508	96,454,545	6,751,810	1,603,550	8,355,360
20120930	20120508	19,104,546	1,337,310	317,600	1,654,910
20120930	20120509	68,909,091	4,823,630	1,144,150	5,967,780
20120930	20120509	78,454,545	5,491,810	1,302,650	6,794,460
20120930	20120509	48,818,182	3,417,270	810,570	4,227,840
20120930	20120510	62,545,455	4,378,180	1,037,180	5,415,360
20120930	20120511	78,090,909	5,466,360	1,293,330	6,759,690
20120930	20120511	71,727,273	5,020,900	1,187,940	6,208,840
20120930	20120511	39,000,000	1,330,000	314,670	1,644,670
20120930	20120511	59,245,454	4,147,180	981,210	5,128,390
20120930	20120514	59,818,182	4,187,270	986,930	5,174,200
20120930	20120514	57,118,182	3,998,270	942,380	4,940,650
20120930	20120515	61,363,636	4,295,450	1,011,140	5,306,590
20120930	20120515	48,818,182	3,417,270	804,420	4,221,690
20120930	20120515	94,636,364	6,624,540	1,559,400	8,183,940
20120930	20120515	70,909,091	4,963,630	1,168,430	6,132,060
20120930	20120516	45,000,000	3,150,000	740,560	3,890,560
20120930	20120516	60,542,727	4,237,990	996,340	5,234,330
20120930	20120516	55,818,182	3,907,270	918,590	4,825,860
20120930	20120516	54,545,455	3,818,180	897,640	4,715,820
20120930	20120516	38,636,364	2,704,540	635,820	3,340,360
20120930	20120516	35,593,636	2,491,550	585,760	3,077,310
20120930	20120517	146,080,909	10,225,660	2,400,980	12,626,640
20120930	20120517	62,545,455	4,378,180	1,027,990	5,406,1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517	59,272,727	4,149,090	974,190	5,123,280
20120930	20120517	17,800,000	890,000	208,970	1,098,970
20120930	20120518	59,603,637	4,172,250	978,390	5,150,640
20120930	20120518	61,363,636	4,295,450	1,007,280	5,302,730
20120930	20120518	46,636,364	3,264,540	765,520	4,030,060
20120930	20120518	48,818,182	3,417,270	801,340	4,218,610
20120930	20120521	57,181,818	4,002,720	935,030	4,937,750
20120930	20120521	636,363	44,540	10,390	54,930
20120930	20120201	50,000,000	3,500,000	933,100	4,433,100
20120930	20120201	76,818,000	5,377,260	1,433,570	6,810,830
20120930	20120202	45,454,000	3,181,780	847,300	4,029,080
20120930	20120203	61,363,636	4,295,450	1,142,580	5,438,030
20120930	20120203	42,727,273	2,990,900	795,570	3,786,470
20120930	20120203	74,500,000	5,215,000	1,387,190	6,602,190
20120930	20120203	35,124,000	2,458,680	654,000	3,112,680
20120930	20120203	60,000,000	4,200,000	1,117,200	5,317,200
20120930	20120206	52,545,455	3,678,180	975,070	4,653,250
20120930	20120207	54,090,909	3,786,360	1,002,620	4,788,980
20120930	20120207	48,363,636	3,385,450	896,460	4,281,910
20120930	20120207	63,545,455	4,448,180	1,177,870	5,626,050
20120930	20120208	63,545,455	4,448,180	1,176,530	5,624,710
20120930	20120209	70,000,000	4,900,000	1,294,580	6,194,580
20120930	20120209	60,000,000	4,200,000	1,109,640	5,309,640
20120930	20120210	74,727,273	5,230,900	1,380,430	6,611,330
20120930	20120210	54,772,727	3,834,090	1,011,800	4,845,890
20120930	20120510	60,000,000	4,200,000	994,980	5,194,980
20120930	20120510	32,545,455	2,278,180	539,690	2,817,870
20120930	20120213	53,181,818	3,722,720	979,070	4,701,790
20120930	20120214	59,727,273	4,180,900	1,098,320	5,279,220
20120930	20120214	63,545,455	4,448,180	1,168,530	5,616,710
20120930	20120214	47,363,636	3,315,450	870,960	4,186,410
20120930	20120214	42,727,272	2,990,900	785,700	3,776,600
20120930	20120214	118,181,818	8,272,720	2,173,230	10,445,950
20120930	20120215	48,181,819	3,372,720	884,990	4,257,710
20120930	20120215	85,818,182	6,007,270	1,576,300	7,583,570
20120930	20120215	49,545,455	3,468,180	910,040	4,378,2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216	49,545,455	3,468,180	909,000	4,377,180
20120930	20120216	63,545,455	4,448,180	1,165,860	5,614,040
20120930	20120216	66,545,455	4,658,180	1,220,900	5,879,080
20120930	20120216	63,545,455	4,448,180	1,165,860	5,614,040
20120930	20120216	61,363,636	4,295,450	1,125,830	5,421,280
20120930	20120216	61,363,636	4,295,450	1,125,830	5,421,280
20120930	20120216	53,181,818	3,722,720	975,720	4,698,440
20120930	20120217	47,363,636	3,315,450	867,980	4,183,430
20120930	20120217	63,545,455	4,448,180	1,164,520	5,612,700
20120930	20120217	95,454,545	6,681,810	1,749,290	8,431,100
20120930	20120217	63,545,455	4,448,180	1,164,520	5,612,700
20120930	20120217	48,363,636	3,385,450	886,310	4,271,760
20120930	20120521	49,545,455	3,468,180	810,160	4,278,340
20120930	20120521	49,545,455	3,468,180	810,160	4,278,340
20120930	20120521	53,100,000	3,717,000	868,290	4,585,290
20120930	20120521	76,818,182	5,377,270	1,256,120	6,633,390
20120930	20120521	31,181,818	2,182,720	509,870	2,692,590
20120930	20120522	58,931,818	4,125,220	962,400	5,087,620
20120930	20120522	62,545,455	4,378,180	1,021,420	5,399,600
20120930	20120522	127,727,273	8,940,900	2,085,910	11,026,810
20120930	20120522	65,265,455	4,568,580	1,065,840	5,634,420
20120930	20120522	53,636,364	3,754,540	875,920	4,630,460
20120930	20120523	59,363,636	4,155,450	968,210	5,123,660
20120930	20120523	59,418,182	4,159,270	969,100	5,128,370
20120930	20120523	72,977,273	5,108,400	1,190,250	6,298,650
20120930	20120523	46,181,818	3,232,720	753,210	3,985,930
20120930	20120524	62,545,455	4,378,180	1,018,790	5,396,970
20120930	20120524	62,545,455	4,378,180	1,018,790	5,396,970
20120930	20120524	109,000,000	7,630,000	1,775,500	9,405,500
20120930	20120524	62,545,455	4,378,180	1,018,790	5,396,970
20120930	20120524	60,542,727	4,237,990	986,170	5,224,160
20120930	20120524	48,363,636	3,385,450	787,790	4,173,240
20120930	20120524	97,994,545	6,859,610	1,596,220	8,455,830
20120930	20120524	96,454,545	6,751,810	1,571,140	8,322,950
20120930	20120524	97,994,545	6,859,610	1,596,220	8,455,830
20120930	20120524	62,545,455	4,378,180	1,018,790	5,396,9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524	59,272,727	4,149,090	965,480	5,114,570
20120930	20120524	53,636,364	3,754,540	873,670	4,628,210
20120930	20120217	94,156,364	6,590,940	1,725,500	8,316,440
20120930	20120220	579,674,545	40,577,210	10,586,590	51,163,800
20120930	20120220	18,181,000	1,272,670	332,030	1,604,700
20120930	20120220	74,727,273	5,230,900	1,364,740	6,595,640
20120930	20120221	49,545,455	3,468,180	903,800	4,371,980
20120930	20120221	61,363,636	4,295,450	1,119,390	5,414,840
20120930	20120221	50,363,637	3,525,450	918,730	4,444,180
20120930	20120221	104,281,818	7,299,720	1,902,300	9,202,020
20120930	20120221	61,363,636	4,295,450	1,119,390	5,414,840
20120930	20120221	49,000,000	3,430,000	893,850	4,323,850
20120930	20120222	98,181,818	6,872,720	1,788,960	8,661,680
20120930	20120222	85,818,182	6,007,270	1,563,680	7,570,950
20120930	20120223	75,454,545	5,281,810	1,373,260	6,655,070
20120930	20120223	81,181,818	5,682,720	1,477,500	7,160,220
20120930	20120223	49,545,455	3,468,180	901,720	4,369,900
20120930	20120224	142,943,636	10,006,050	2,598,570	12,604,620
20120930	20120224	141,363,636	9,895,450	2,569,840	12,465,290
20120930	20120227	49,545,455	3,468,180	897,550	4,365,730
20120930	20120227	74,727,273	5,230,900	1,353,750	6,584,650
20120930	20120228	54,454,545	3,811,810	985,350	4,797,160
20120930	20120228	75,272,727	5,269,090	1,362,050	6,631,140
20120930	20120228	160,727,273	11,250,900	2,908,350	14,159,250
20120930	20120228	22,909,080	1,603,630	414,530	2,018,160
20120930	20120229	90,363,636	6,325,450	1,633,230	7,958,680
20120930	20120229	99,721,818	6,980,520	1,802,360	8,782,880
20120930	20120229	73,181,818	5,122,720	1,322,680	6,445,400
20120930	20120229	176,818,182	12,377,270	3,195,800	15,573,070
20120930	20120229	186,727,000	13,070,890	3,374,890	16,445,780
20120930	20120229	43,363,636	3,035,450	783,750	3,819,200
20120930	20120229	45,513,636	3,185,950	822,610	4,008,560
20120930	20120229	129,909,091	9,093,630	2,347,960	11,441,590
20120930	20120229	73,272,000	5,129,040	1,324,310	6,453,350
20120930	20120229	63,545,455	4,448,180	1,148,510	5,596,690
20120930	20120229	60,363,636	4,225,450	1,091,010	5,316,4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229	30,000,000	2,100,000	542,220	2,642,220
20120930	20120229	27,727,000	1,940,890	501,120	2,442,01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229	32,454,545	2,271,810	586,570	2,858,380
20120930	20120524	59,272,727	4,149,090	965,480	5,114,570
20120930	20120524	67,909,091	4,753,630	1,106,160	5,859,790
20120930	20120525	64,090,909	4,486,360	1,042,620	5,528,980
20120930	20120525	59,272,727	4,149,090	964,240	5,113,330
20120930	20120525	54,545,455	3,818,180	887,330	4,705,510
20120930	20120525	57,090,909	3,996,360	928,750	4,925,110
20120930	20120525	59,454,545	4,161,810	967,200	5,129,010
20120930	20120525	39,818,182	2,787,270	647,750	3,435,020
20120930	20120525	85,272,727	5,969,090	1,387,200	7,356,290
20120930	20120525	62,545,455	4,378,180	1,017,480	5,395,660
20120930	20120525	59,363,636	4,155,450	965,720	5,121,170
20120930	20120525	42,775,454	2,994,280	695,860	3,690,140
20120930	20120529	167,272,727	11,709,090	2,707,130	14,416,220
20120930	20120530	83,818,182	5,867,270	1,354,740	7,222,010
20120930	20120530	61,363,636	4,295,450	991,810	5,287,260
20120930	20120530	59,272,727	4,149,090	958,010	5,107,100
20120930	20120530	96,454,545	6,751,810	1,558,990	8,310,800
20120930	20120530	62,545,455	4,378,180	1,010,910	5,389,090
20120930	20120530	46,600,000	3,262,000	753,190	4,015,190
20120930	20120530	59,272,727	4,149,090	958,010	5,107,100
20120930	20120530	54,090,909	3,786,360	874,260	4,660,620
20120930	20120229	32,454,545	2,271,810	586,570	2,858,38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229	32,454,545	2,271,810	586,570	2,858,38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229	32,454,545	2,271,810	586,570	2,858,38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229	34,090,909	2,386,360	616,150	3,002,510
20120930	20120302	63,545,455	4,448,180	1,145,840	5,594,020
20120930	20120530	59,818,182	4,187,270	966,830	5,154,100
20120930	20120531	60,909,091	4,263,630	983,180	5,246,8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531	45,181,818	3,162,720	729,310	3,892,030
20120930	20120531	45,181,818	3,162,720	729,310	3,892,030
20120930	20120531	59,727,273	4,180,900	964,110	5,145,010
20120930	20120531	59,272,727	4,149,090	956,770	5,105,860
20120930	20120531	200,000,000	14,000,000	3,228,400	17,228,400
20120930	20120531	96,454,545	6,751,810	1,556,960	8,308,770
20120930	20120531	49,727,273	3,480,900	802,690	4,283,590
20120930	20120531	19,307,272	1,351,500	311,650	1,663,150
20120930	20120531	110,909,091	7,763,630	1,790,280	9,553,910
20120930	20120302	63,545,455	4,448,180	1,145,840	5,594,020
20120930	20120302	54,090,909	3,786,360	975,360	4,761,720
20120930	20120305	63,545,455	4,448,180	1,141,840	5,590,020
20120930	20120305	57,036,364	3,992,540	1,024,870	5,017,410
20120930	20120305	57,727,273	4,040,900	1,037,290	5,078,190
20120930	20120305	49,545,455	3,468,180	890,270	4,358,450
20120930	20120306	150,909,091	10,563,630	2,708,500	13,272,130
20120930	20120307	49,545,455	3,468,180	888,190	4,356,370
20120930	20120307	66,545,455	4,658,180	1,192,950	5,851,130
20120930	20120307	142,943,636	10,006,050	2,562,540	12,568,590
20120930	20120308	28,792,363	2,015,460	515,550	2,531,010
20120930	20120309	50,000,000	3,500,000	894,250	4,394,250
20120930	20120309	73,181,818	5,122,720	1,308,850	6,431,570
20120930	20120309	129,909,091	9,093,630	2,323,410	11,417,040
20120930	20120309	32,000,000	2,240,000	572,320	2,812,320
20120930	20120309	54,090,909	3,786,360	967,410	4,753,770
20120930	20120312	70,000,000	4,900,000	1,247,540	6,147,540
20120930	20120312	52,181,818	3,652,720	929,970	4,582,690
20120930	20120312	70,709,091	4,949,630	1,260,160	6,209,790
20120930	20120312	50,000,000	3,500,000	891,100	4,391,100
20120930	20120313	52,752,727	3,692,690	939,040	4,631,730
20120930	20120314	48,818,182	3,417,270	867,980	4,285,250
20120930	20120314	61,363,000	4,295,410	1,091,030	5,386,440
20120930	20120314	59,272,727	4,149,090	1,053,860	5,202,950
20120930	20120315	68,909,091	4,823,630	1,223,740	6,047,370
20120930	20120315	113,090,909	7,916,360	2,008,370	9,924,730
20120930	20120315	173,636,364	12,154,540	3,083,590	15,238,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315	55,636,364	3,894,540	988,030	4,882,570
20120930	20120315	58,000,000	4,060,000	1,030,020	5,090,020
20120930	20120315	69,909,091	4,893,630	1,241,500	6,135,130
20120930	20120316	72,000,000	5,040,000	1,277,130	6,317,130
20120930	20120316	106,374,545	7,446,210	1,886,860	9,333,070
20120930	20120316	177,272,727	12,409,090	3,144,450	15,553,540
20120930	20120316	54,363,636	3,805,450	964,300	4,769,750
20120930	20120316	48,818,182	3,417,270	865,930	4,283,200
20120930	20120316	59,727,273	4,180,900	1,059,440	5,240,340
20120930	20120316	62,545,455	4,378,180	1,109,420	5,487,600
20120930	20120316	78,454,545	5,491,810	1,391,620	6,883,430
20120930	20120319	59,909,091	4,193,630	1,058,880	5,252,510
20120930	20120319	68,727,273	4,810,900	1,214,750	6,025,650
20120930	20120319	127,727,273	8,940,900	2,257,570	11,198,470
20120930	20120319	262,727,273	18,390,900	4,643,700	23,034,600
20120930	20120319	114,454,000	8,011,780	2,022,960	10,034,740
20120930	20120319	25,454,000	1,272,700	321,350	1,594,050
20120930	20120321	62,545,455	4,378,180	1,102,850	5,481,030
20120930	20120321	110,909,091	7,763,630	1,955,650	9,719,280
20120930	20120321	208,090,909	14,566,360	3,669,260	18,235,620
20120930	20120321	62,545,455	4,378,180	1,102,850	5,481,030
20120930	20120321	62,545,455	4,378,180	1,102,850	5,481,030
20120930	20120321	53,181,818	3,722,720	937,740	4,660,460
20120930	20120321	59,727,273	4,180,900	1,053,160	5,234,060
20120930	20120322	57,000,000	3,990,000	1,003,880	4,993,880
20120930	20120322	68,909,091	4,823,630	1,213,610	6,037,240
20120930	20120322	34,272,727	999,090	251,360	1,250,450
20120930	20120322	54,090,909	3,786,360	952,640	4,739,000
20120930	20120322	62,545,455	4,378,180	1,101,540	5,479,720
20120930	20120322	59,272,727	4,149,090	1,043,900	5,192,990
20120930	20120322	55,000,000	3,850,000	968,660	4,818,660
20120930	20120323	79,000,000	5,530,000	1,389,680	6,919,680
20120930	20120323	113,090,909	7,916,360	1,989,370	9,905,730
20120930	20120323	62,545,455	4,378,180	1,100,230	5,478,410
20120930	20120323	48,363,636	3,385,450	850,760	4,236,210
20120930	20120327	70,000,000	4,900,000	1,225,490	6,125,4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327	59,727,273	4,180,900	1,045,640	5,226,540
20120930	20120327	96,267,273	6,738,700	1,685,340	8,424,040
20120930	20120327	20,000,000	1,400,000	350,140	1,750,140
20120930	20120327	30,818,182	2,157,270	539,520	2,696,790
20120930	20120327	92,449,091	6,471,430	1,618,490	8,089,920
20120930	20120328	59,272,727	4,149,090	1,036,430	5,185,520
20120930	20120328	54,727,273	3,830,900	956,950	4,787,850
20120930	20120328	62,545,455	4,378,180	1,093,660	5,471,840
20120930	20120328	28,454,546	591,810	147,830	739,640
20120930	20120328	31,909,091	2,233,630	557,950	2,791,580
20120930	20120329	59,272,727	4,149,090	1,035,180	5,184,270
20120930	20120329	74,363,636	5,205,450	1,298,750	6,504,200
20120930	20120329	30,818,182	2,157,270	538,230	2,695,500
20120930	20120329	145,454,545	10,181,810	2,540,350	12,722,160
20120930	20120329	36,272,727	2,539,090	633,490	3,172,580
20120930	20120329	110,909,091	7,763,630	1,937,010	9,700,640
20120930	20120329	34,272,727	999,090	249,260	1,248,350
20120930	20120330	68,579,091	4,800,530	1,196,280	5,996,810
20120930	20120330	62,545,455	4,378,180	1,091,030	5,469,210
20120930	20120330	117,636,364	8,234,540	2,052,030	10,286,570
20120930	20120330	31,869,000	2,230,830	555,910	2,786,740
20120930	20120330	53,545,455	3,748,180	934,040	4,682,220
20120930	20120109	90,363,636	6,325,450	1,730,010	8,055,460
20120930	20120109	79,818,182	5,587,270	1,528,110	7,115,380
20120930	20120330	110,272,727	7,719,090	1,923,580	9,642,670
20120930	20120402	58,272,727	4,079,090	1,012,830	5,091,920
20120930	20120402	100,000,000	7,000,000	1,738,100	8,738,100
20120930	20120402	80,268,182	5,618,770	1,395,130	7,013,900
20120930	20120402	16,000,000	1,120,000	278,090	1,398,090
20120930	20120402	53,545,455	3,748,180	930,660	4,678,840
20120930	20120403	57,090,909	3,996,360	991,090	4,987,450
20120930	20120403	62,545,455	4,378,180	1,085,780	5,463,960
20120930	20120403	28,454,545	591,810	146,760	738,570
20120930	20120404	45,000,000	3,150,000	780,250	3,930,250
20120930	20120404	96,454,545	6,751,810	1,672,420	8,424,230
20120930	20120404	62,545,455	4,378,180	1,084,460	5,462,6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404	242,890,000	17,002,300	4,211,460	21,213,760
20120930	20120404	85,272,727	5,969,090	1,478,530	7,447,620
20120930	20120404	28,454,545	591,810	146,580	738,390
20120930	20120405	59,272,727	4,149,090	1,026,470	5,175,560
20120930	20120405	73,327,273	5,132,900	1,269,870	6,402,770
20120930	20120405	38,181,000	2,672,670	661,210	3,333,880
20120930	20120406	30,818,182	2,157,270	533,050	2,690,320
20120930	20120406	30,818,182	2,157,270	533,050	2,690,320
20120930	20120406	152,181,818	10,652,720	2,632,280	13,285,000
20120930	20120110	59,909,091	4,193,630	1,145,690	5,339,320
20120930	20120111	98,181,818	6,872,720	1,875,560	8,748,280
20120930	20120406	20,522,000	1,436,540	354,960	1,791,500
20120930	20120406	61,872,727	4,331,090	1,070,200	5,401,290
20120930	20120406	64,727,273	4,530,900	1,119,580	5,650,480
20120930	20120409	62,545,455	4,378,180	1,077,900	5,456,080
20120930	20120409	34,272,000	999,040	245,950	1,244,990
20120930	20120410	41,818,182	2,927,270	719,810	3,647,080
20120930	20120412	95,000,000	6,650,000	1,631,240	8,281,240
20120930	20120412	78,020,000	5,461,400	1,339,680	6,801,080
20120930	20120412	60,000,000	4,200,000	1,030,260	5,230,260
20120930	20120412	37,272,000	2,609,040	639,980	3,249,020
20120930	20120412	48,818,182	3,417,270	838,250	4,255,520
20120930	20120412	96,454,545	6,751,810	1,656,210	8,408,020
20120930	20120413	62,545,455	4,378,180	1,072,640	5,450,820
20120930	20120413	95,090,909	6,656,360	1,630,800	8,287,160
20120930	20120413	47,454,545	3,321,810	813,840	4,135,650
20120930	20120413	83,000,000	5,810,000	1,423,450	7,233,450
20120930	20120416	78,020,000	5,461,400	1,333,120	6,794,520
20120930	20120416	22,909,090	1,603,630	391,440	1,995,070
20120930	20120417	127,727,273	8,940,900	2,179,790	11,120,690
20120930	20120417	58,636,364	4,104,540	1,000,670	5,105,210
20120930	20120417	67,454,545	4,721,810	1,151,170	5,872,980
20120930	20120419	236,363,000	16,545,410	4,023,840	20,569,250
20120930	20120419	53,181,818	3,722,720	905,360	4,628,080
20120930	20120420	59,418,182	4,159,270	1,010,280	5,169,550
20120930	20120420	62,181,819	4,352,720	1,057,270	5,409,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420	80,000,000	5,600,000	1,360,240	6,960,240
20120930	20120420	127,727,273	8,940,900	2,171,740	11,112,640
20120930	20120420	90,909,000	6,363,630	1,545,710	7,909,340
20120930	20120420	129,272,727	9,049,090	2,198,010	11,247,100
20120930	20120420	81,545,455	5,708,180	1,386,510	7,094,690
20120930	20120420	47,000,000	3,290,000	799,140	4,089,140
20120930	20120423	177,272,727	12,409,090	3,002,990	15,412,080
20120930	20120423	48,818,182	3,417,270	826,970	4,244,240
20120930	20120424	66,500,000	4,655,000	1,125,110	5,780,110
20120930	20120424	59,727,273	4,180,900	1,010,520	5,191,420
20120930	20120424	70,400,000	4,928,000	1,191,090	6,119,090
20120930	20120424	53,545,455	3,748,180	905,920	4,654,100
20120930	20120424	41,818,182	2,927,270	707,510	3,634,780
20120930	20120424	48,363,636	3,385,450	818,260	4,203,710
20120930	20120425	45,818,182	3,207,270	774,230	3,981,500
20120930	20120425	83,363,636	5,835,450	1,408,670	7,244,120
20120930	20120425	75,272,727	5,269,090	1,271,950	6,541,040
20120930	20120426	62,545,455	4,378,180	1,055,570	5,433,750
20120930	20120426	53,545,455	3,748,180	903,680	4,651,860
20120930	20120112	62,545,000	4,378,150	1,193,480	5,571,630
20120930	20120112	85,000,000	5,950,000	1,621,970	7,571,970
20120930	20120113	66,454,545	4,651,810	1,266,680	5,918,490
20120930	20120113	109,090,909	7,636,360	2,079,370	9,715,730
20120930	20120113	98,181,818	6,872,720	1,871,430	8,744,150
20120930	20120113	33,124,545	2,318,710	631,380	2,950,090
20120930	20120116	74,727,273	5,230,900	1,419,660	6,650,560
20120930	20120116	45,644,546	3,195,110	867,150	4,062,260
20120930	20120116	48,000,000	3,360,000	911,900	4,271,900
20120930	20120117	20,181,818	1,412,720	382,980	1,795,700
20120930	20120117	15,000,000	1,050,000	284,650	1,334,650
20120930	20120426	44,018,182	3,081,270	742,890	3,824,160
20120930	20120427	85,909,091	6,013,630	1,448,070	7,461,700
20120930	20120427	98,636,364	6,904,540	1,662,600	8,567,140
20120930	20120427	44,018,182	3,081,270	741,960	3,823,230
20120930	20120427	58,167,273	4,071,700	980,460	5,052,160
20120930	20120427	70,727,273	4,950,900	1,192,170	6,143,0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20120930	20120427	109,000,000	7,630,000	1,837,300	9,467,300
20120930	20120427	48,818,182	3,417,270	822,870	4,240,140
20120930	20120427	29,181,819	2,042,720	491,880	2,534,600
20120930	20120427	59,272,727	4,149,090	999,090	5,148,180
20120930	20120427	62,545,455	4,378,180	1,054,250	5,432,430
20120930	20120427	39,000,000	1,330,000	320,260	1,650,260
20120930	20120430	108,000,000	7,560,000	1,813,640	9,373,640
20120930	20120430	59,272,727	4,149,090	995,350	5,144,440
20120930	20120430	48,818,182	3,417,270	819,790	4,237,060
20120930	20120430	62,545,455	4,378,180	1,050,310	5,428,490
20120930	20120430	59,272,727	4,149,090	995,350	5,144,440
20120930	20120430	72,000,000	5,040,000	1,209,090	6,249,090
20120930	20120430	119,454,545	8,361,810	2,005,990	10,367,800
20120930	20120430	37,818,182	2,647,270	635,070	3,282,340
20120930	20120430	110,909,091	7,763,630	1,862,480	9,626,110
20120930	20120430	54,545,455	3,818,180	915,970	4,734,150
20120930	20120430	30,818,182	2,157,270	517,520	2,674,790
합계		30,968,187,271	2,155,706,370	540,172,690	2,695,879,06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납부 내역(단위: 원)		
	2011년	2012년	합계
경남 함안군	1,636,454,800	2,230,939,370	3,867,394,170
경남 창원시	4,895,796,210	54,389,260	4,950,185,47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의 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본거지"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말한다.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2014. 3. 20. 서울특별시 조례 제5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6. 차량·기계장비: 종류, 연식, 용도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제10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지방세법」 제20조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끝.